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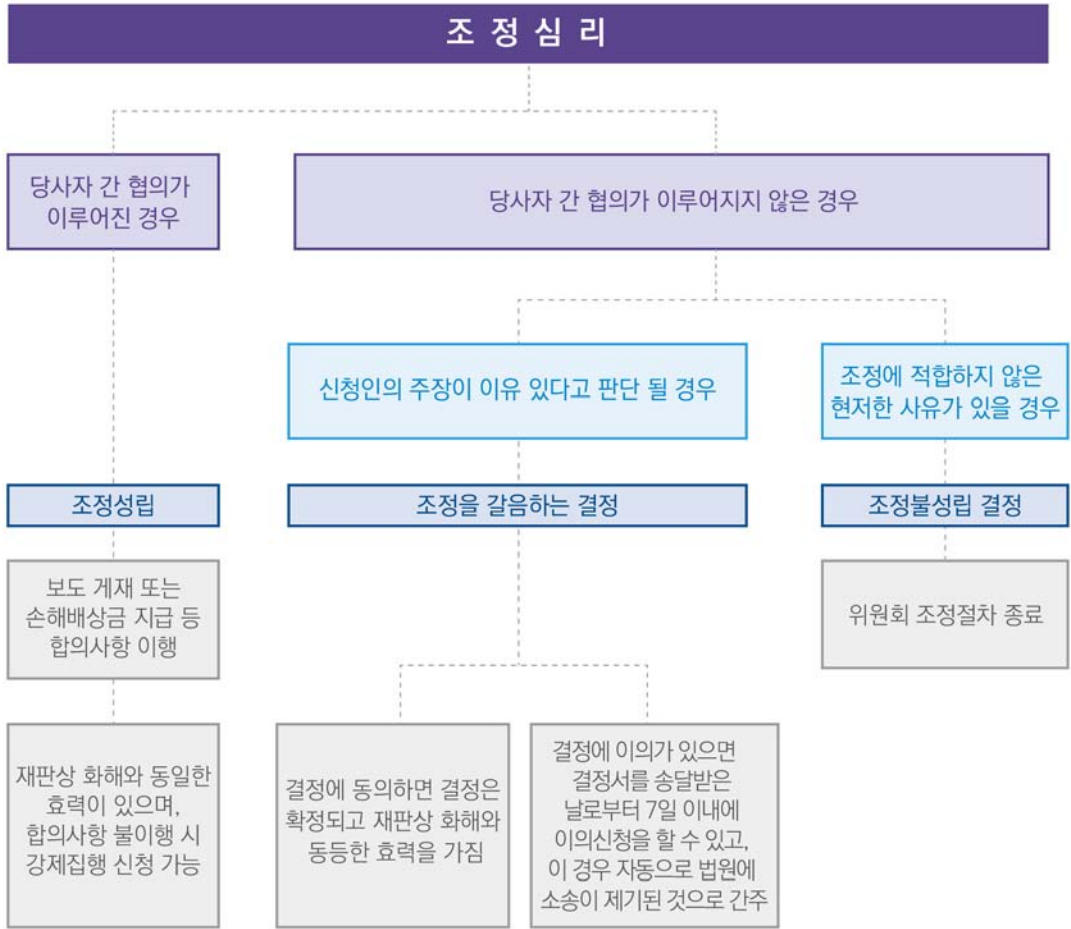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이용안내

- 본 사례집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수록함
- 2019년도 전체 사건 3,544건 가운데 처리결과별 주요 사례 60건을 선정하여 접수일 순으로 소개함
※ 처리결과 분류 : 정정보도 게재/반론보도 게재/추후보도 게재/손해배상금 지급/기사수정 또는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주요 사례는 조정 제도의 비공개 원칙과 사례집의 발간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건 및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편집하여 작성함
- 〈부록〉에서는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처리현황’을 수록함

조정절차 흐름도



사례집 용어 설명

■ 언론조정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대상매체]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 **중재**는 중재부의 중립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언론사가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따르겠다는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함

■ 청구권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음

■ 반론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 형태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가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이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 인격권 침해 유형

■ 명예훼손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에 적시됐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됨

■ 초상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됐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함

■ 재산권 침해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 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권 침해가 인정됨

■ 사생활 침해

사생활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언론이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

■ 음성권 침해

목소리에 대한 권리로, 기자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함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됨

■ 조정사건 처리결과 종류

■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언론사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취지를 수용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이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 신청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 조정불성립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조정절차 종료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등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

신청기간을 넘겨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 취하

조정과정 중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Contents

■	제1부 언론조정현황	17
■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25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27
	사례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신청인의 강연 내용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89·90 정정·손배청구	28
	사례 2 민간 노인요양원의 운영 비리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요양원의 외관을 방영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266 정정청구	31
	사례 3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684·685/686·687 각 정정·손배청구	33
	사례 4 기관의 홈페이지와 시설 외관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영했어도 보도에 당사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광주조정29·30, 2019광주조정31·3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35
	사례 5 폭행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957·958/959·960, 2019서울조정961·96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38
	사례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감사결과를 잘못 보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부산조정28 정정청구	40

Contents

사례 7	신청인과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를 왜곡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156 정정청구	42
사례 8	부친의 공로를 타인의 공로로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서훈 주관 부처의 확인을 근거로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1238 · 1239/1240 · 1241 각 정정 · 손해청구	44
사례 9	신청인이 수입 · 판매하는 목재펠릿 제품의 하역장면을 보도하면서 이물질이 섞인 불량제품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하고 취하한 사례 2019전북조정40 정정청구	47
사례 10	야구 경기 기록원인 신청인이 자녀의 타율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협회 공식자료에 따라 자녀의 경기성적을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479 · 1480/1481 · 1482 각 정정 · 손해청구	49
사례 11	실제 제출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와의 통화만으로 준공서류가 위조됐다고 단정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2019경남조정66 정정청구	52
사례 12	기사 본문은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사 제목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2019제주조정11 정정청구	55
사례 13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부산조정61, 2019부산조정62(병합) 각 정정청구	58
사례 14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제보자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2133 정정청구	60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63

- 사례 15** 언론사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371·372·373 정정·반론·손배청구 64
- 사례 16**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반복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398/399 각 반론청구 67
- 사례 17**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취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신청인 측 반론을 보충적으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497·498·499, 2019서울조정500·501·502(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69
- 사례 18**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581·582·583 정정·반론·손배청구 72
- 사례 19**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비판 수인한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보다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경기조정90/91 각 정정청구 75
- 사례 20**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피신청인 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후속보도 형태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대전조정32 반론청구 78
- 사례 21** 의혹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도한 데 비해 당사자의 해명은 형식적으로 반영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부산조정32 정정청구 80

Contents

사례 22	정부 정책에 관한 공공연한 의혹 또는 소문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이 아닌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385 · 1386, 2019서울조정1387 · 1388(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83
사례 23	성명서의 진의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의견표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중재부의 판단에 근거해 상세한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785 · 1786 정정 · 손해청구	86
사례 24	장기 미제사건의 부실수사를 비판한 보도에서 국과수 감식결과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해석차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1856 · 1857 정정 · 손해청구	89
사례 25	신청인과 소송 중인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관피아’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대구조정80 · 81 정정 · 손해청구	92
사례 26	기관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하고 제목 및 본문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2195/2196 각 정정청구	94
사례 27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노조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2460 · 2461 정정 · 손해청구	96
사례 28	지역아동센터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보도한 데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반론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2019광주조정84 · 85 정정 · 손해청구	98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101

- 사례 29** 신청인이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무혐의 처분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2019경기조정15·16 추후·손배청구 102
- 사례 30** 전직 보육교사의 제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614·615/616·617 각 추후·손배청구 104
- 사례 31** 무혐의 처분 받은 혐의사실과 관련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항고 기각 결정에 따른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2019서울조정1507 추후청구 107
- 사례 32** 보도에 언급된 대학 교수의 갑질 행위 중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방송 및 유튜브에 추후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대전조정79·80 추후·손배청구 109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111

- 사례 33**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SNS글을 사용한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82 손배청구 112
- 사례 34**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촬영·공표한 사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정보통신망에 매개된 사실을 인지하는 대로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205·206 정정·손배청구 114

Contents

사례 35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573·574 정정·손배청구	116
사례 36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626·627/628·629 각 정정·손배청구	119
사례 37	특정 지자체를 상대로 짧은 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비판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한 위법성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2019전북조정31·32, 2019전북조정33·34, 2019전북조정35·36, 2019전북조정38·39 각 정정·손배청구	122
사례 38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병원 간판을 노출한 데 대해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966·967 정정·손배청구	129
사례 39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위해 제공한 사진을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에 동의 없이 재사용한 데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대구조정32 손배청구	131
사례 40	공직자의 정당한 휴가를 ‘기강 해이’ 사례로 보도한 데 대해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108·1109 반론·손배청구	133
사례 41	사기 사건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사진을 신청인의 항의로 교체했다라도 노출 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19서울조정2006·2007 정정·손배청구	135



<p>사례 42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2019대전조정85 손해청구</p>	137
<p>사례 43 사적 분쟁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일방의 입장만을 듣고 편파 보도한 데 대해 기사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할 것을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2019제주조정12·13/14·15 각 정정·손배청구</p>	139
<p>사례 44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기사 오류를 인정, 열람·검색 차단 및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충북조정44·45 정정·손배청구</p>	141
<p>제5장 기사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143</p>	
<p>사례 45 원 보도에 신청인 측 입장을 추가하고 보도에 연동된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강원조정9·10 정정·손배청구</p>	144
<p>사례 46 유명 가수의 부친에 관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유명 가수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 데 대해 제목과 본문에서 실명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526 정정청구</p>	146
<p>사례 47 방송 사실을 숨기고 영상을 촬영 및 방송한 데 대해 다시보기 영상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2019서울조정1552 손해청구</p>	148
<p>사례 48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있었던 논쟁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 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585 정정청구</p>	149

Contents

<p>사례 49</p>	<p>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신원을 특정해 ‘사기 사건 가담자’로 단정보도한 데 대해 기사 본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서울조정1947/1948 각 정정청구</p>	<p>151</p>
<p>사례 50</p>	<p>신청인의 성씨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했다라도 보도된 신청인의 혐의사실과 무죄 판결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2019부산조정56 추후청구</p>	<p>153</p>
<p>사례 51</p>	<p>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제목과 본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2019강원조정78·79 정정·손배청구</p>	<p>154</p>
<p>사례 52</p>	<p>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를 엠바고를 파기한 보도라고 표현한 데 대해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취하한 사례 2019경남조정93 반론청구</p>	<p>156</p>
<p>제6장 기타 사례</p>		<p>157</p>
<p>사례 53</p>	<p>경쟁 업체의 허위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원 기사는 물론, 기자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기사에 대해서도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2019서울조정54 정정청구</p>	<p>158</p>
<p>사례 54</p>	<p>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2019서울조정1678 정정청구</p>	<p>159</p>
<p>사례 55</p>	<p>과거 제품회수 명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품회수 행정명령 취소 판결에 따른 추후보도를 청구했으나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인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사안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2019서울조정1704, 2019서울조정1705, 2019서울조정1706, 2019서울조정1707, 2019서울조정1708(병합) 각 추후청구</p>	<p>161</p>

<p>사례 56</p>	<p>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명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언론사 계정의 유튜브 및 SNS에서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향후 발견되는 기사 복제글에 대해서도 삭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사례</p> <p>2019경기조정183 · 184 · 185 정정 · 반론 · 손해청구</p>	<p>163</p>
<p>사례 57</p>	<p>자극적인 표현으로 공직자를 비판한 사실에 대해 과도한 의견표명임을 인정하면 서도 신청인이 공인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 간 화해를 권유, 심리 중 취하한 사례</p> <p>2019전북조정47 · 48/ 49 · 50 각 정정 · 손해청구</p>	<p>165</p>
<p>사례 58</p>	<p>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실 보도 이후 부당하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향후 활동에 관한 PR보도를 게재하고 취하한 사례</p> <p>2019서울조정1929 · 1930 반론 · 손해청구</p>	<p>167</p>
<p>사례 59</p>	<p>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된 기고문을 동의 없이 게재한 데 대해 원 기고문을 다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p> <p>2019서울조정2092 · 2093 정정 · 손해청구</p>	<p>169</p>
<p>사례 60</p>	<p>은퇴한 운동선수는 더 이상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에서 성명과 사진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p> <p>2019서울조정2160 손해청구</p>	<p>171</p>

부록: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73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부
언론조정현황

제1부 언론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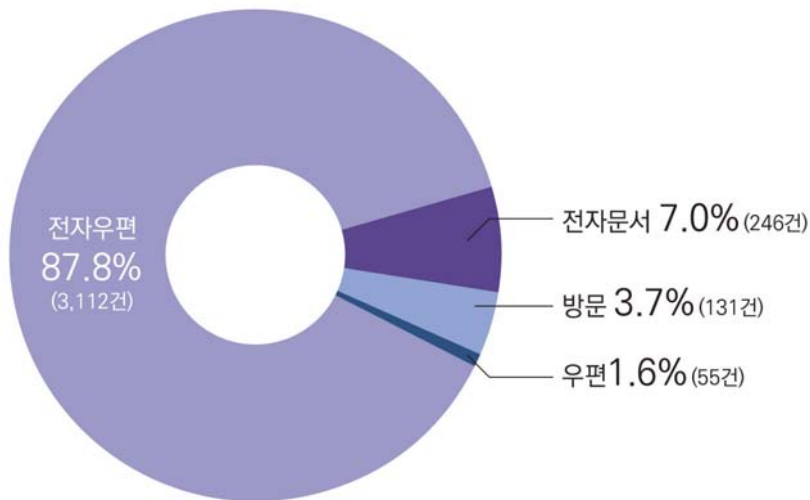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19년 총 3,54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고, 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방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 3,112건(87.8%), 전자문서 246건(7.0%), 위원회 사무실 방문 131건(3.7%), 우편 55건(1.6%) 순이었다.

전자우편(E-mail) 및 전자문서를 통한 사건접수 비율은 2017년 91.6%, 2018년 91.9%, 2019년 94.8%를 기록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접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2019년도 중재 신청사건은 접수되지 않음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년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된 청구는 정정보도청구였다. 정정보도청구는 총 3,544건 중 1,623건으로 접수사건의 절반(45.8%)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고, 손해배상청구 1,263건(35.6%), 반론보도청구 506건(14.3%), 추후보도청구 152건(4.3%)이 뒤를 이었다.

청구권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것은 추후보도청구인 것으로 집계됐다(93.2%). 그밖에 반론보도청구 71.1%, 손해배상청구 68.2%, 정정보도청구 67.3%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고, 2019년 사건 전체의 피해구제율은 69.2%이었다.

**표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623	560	67	41	(2)	367	(12)	112	11	368	97	67.3
반론	506	169	17	12	(1)	95		72	12	113	16	71.1
추후	152	12		3		6		1	18	112		93.2
손배	1,263	388	37	44	(3)	266	(14)	94	24	339	71	68.2
계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934건, 단체는 1,610건을 각 청구했다.

개인 청구사건 중 69.9%의 사건이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 전 보도게재, 기사 열람·검색 차단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이 가장 많았고(585건, 30.2%), 조정성립 499건(25.8%), 조정불성립결정 370건(19.1%)건 등의 순으로 종결됐다.

단체 청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청인 유형은 일반기업체 등 회사였다(652건, 40.5%). 뒤를 이어 일반단체 532건, 지자체·공공단체 241건, 교육기관 74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단체별 피해구제율은 국가기관이 78.5%로 집계되어 가장 높았고, 회사 71.6%, 지자체·공공단체 70.6%, 일반단체 65.6%, 교육기관 60.9% 등의 순이었으며, 종교단체가 청구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39.0%로 가장 낮았다.

표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1,934	499	81	44	(2)	370	(8)	208	44	585	103	69.9	
단체	국가기관	66	35	2	6	8		1		14		78.5	
	지자체·공공단체	241	101	5	26	30	(4)	3		58	18	70.6	
	일반단체	532	226	19	9	137	(2)	35	9	73	24	65.6	
	종교단체	45	11		4	21		4		5		39.0	
	회사	652	227	9	11	(4)	152	(12)	28	7	190	28	71.6
	교육기관	74	30	5		16		5	7	11		60.9	
계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4.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2,055건, 58.0%). 뒤이어 신문 462건(13.1%), 방송 436건(12.3%), 인터넷뉴스서비스 388건(11.0%), 뉴스통신 187건(5.3%)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의 비중은 2017년 76.3%, 2018년 77.4%, 2019년 74.2%로, 3년째 전체 사건의 70%를 웃돌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다.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 역시 인터넷신문이 73.1%로 가장 높았다. 그밖에 신문 70.0%, 인터넷뉴스서비스 64.4%, 방송 60.1% 등의 순이었고, 유튜브를 대상으로 청구하여 '기타'로 분류된 4건은 모두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됐다.

표 4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매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율 (%)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문	462	226	9	13	93 (4)	13	6	71	31	70.0		
방송	436	166	23	8 (2)	122 (3)	42	6	39	30	60.1		
잡지	12	4		3	3	1		1		45.5		
뉴스통신	187	46	3	19	38	21	7	43	10	57.9		
인터넷신문	2,055	580	68	49 (4)	384 (18)	157	46	683	88	73.1		
인터넷뉴스서비스	388	107	18	8	90 (1)	45		95	25	64.4		
기타	4				4							
계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년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명예훼손에 따른 사건으로, 전체 사건의 9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예훼손 사건 3,478건 중 1,111건(31.9%)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됐고, 심리가 개최되기 전에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이 915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719건(20.7%), 직권조정결정 218건(6.3%) 순으로 처리됐다.

침해 유형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한 것은 초상권 침해 사건(88.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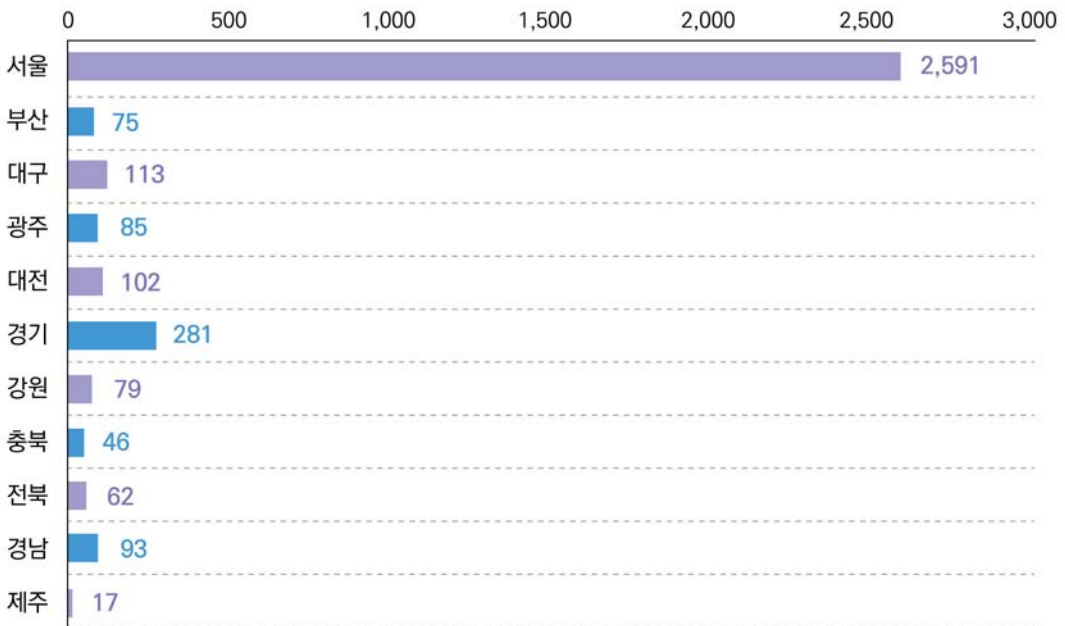

표 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침해유형	청구 건수	조정 성립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4)	(3)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478	1,111	120	98	(4)	719	(23)	273	65	915	177	69.2
초상권 침해	28	6	1	2	(2)	4	(3)	2		11	2	88.5
음성권 침해	5	2				3						40.0
성명권 침해	7	4				1				2		85.7
사생활 침해	5	1				1				3		80.0
재산상 손해	15	4				6		1			4	28.6
기 타	6	1						3		1	1	66.7
계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6.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2019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정건수 3,544건 중 서울 8개 중재부가 2,591건(73.1%)을, 지역의 10개 중재부는 953건(26.9%)을 접수·처리했다. 지역중재부 가운데 경기중재부가 가장 많은 281건(7.9%)을 처리했고, 이어 대구중재부 113건(3.2%), 대전중재부 102건(2.9%) 등의 순서를 보였다.

표 6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7.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9년 손해배상청구 1,263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53건(4.2%)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00억 원까지 분포했다. 청구액의 평균은 약 1억 5천만 원이고, 중앙액은 2천만 원이다.

조정액은 최저 15만 원, 최고 1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 1억 원으로 조정된 사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간주된 사례이며,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 최고액은 1,500만 원이었다.

조정액 평균은 480여만 원으로 작년 190여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합의 간주된 조정 최고액 사건을 제외한 평균액은 약 2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40건(75.4%), 초상권 침해 11건(20.7%), 성명권 침해와 기타가 각 1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7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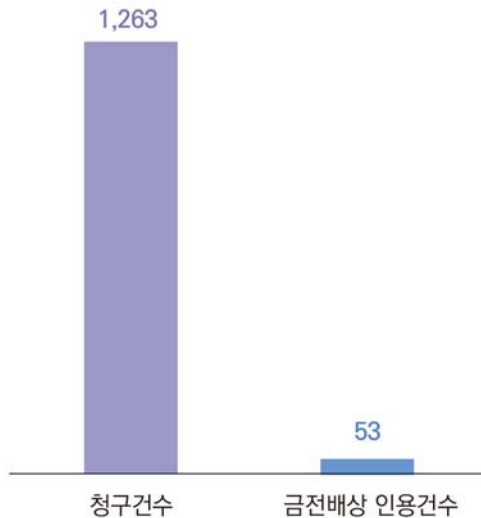


표 8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9. 1. 1. ~ 2019. 12. 31. /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100,000	10,000,000,000	149,966,481	20,000,000



표 9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9. 1. 1. ~ 2019. 12. 31. /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150,000	100,000,000	4,817,442	2,000,000

표 10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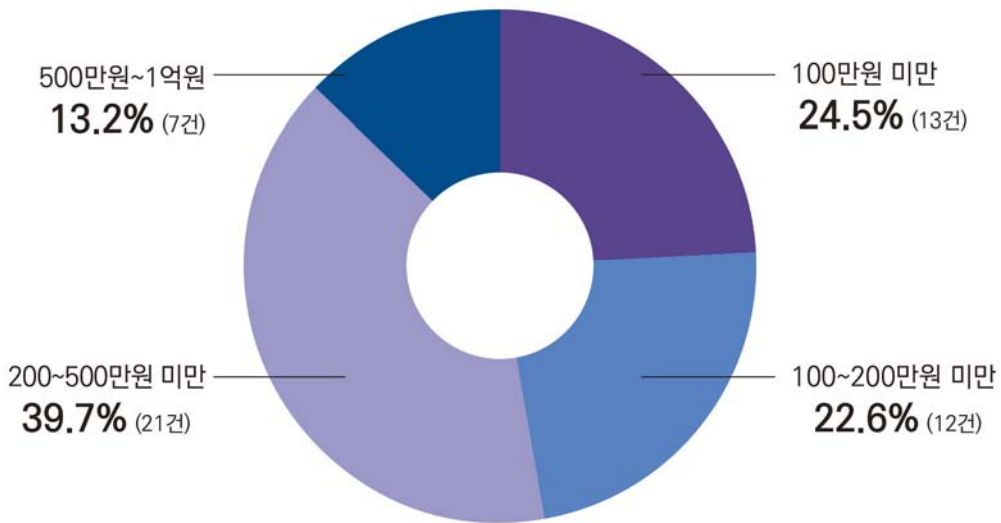


표 11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9. 1. 1. ~ 2019.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40	200,000	100,000,000	6,100,000	2,000,000	3,000,000
초상권 침해		11	200,000	3,000,000	1,255,556	1,00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1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기타		1	150,000	150,000	150,000	150,000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제5장 기사수정 / 열람 · 검색 차단 사례
- 제6장 기타 사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19서울조정89·90 정정·손배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신청인의 강연 내용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과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신청인은 반론 보도와 함께 성명과 사진을 기사에서 삭제해 달라고만 요청했고,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서적이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거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반론보도 게재와 성명 및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중재부의 권고였을 뿐 신청인이 요청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강연 중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반론보도 및 사진 삭제는 신청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기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신청인은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주장과 강연에서 언급한 사례 등에는 오류가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조정대상기사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를음을 인정해 정정보도 게재에 동의했고, 신청인의 강연 내용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씨는 11월 에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그는 가 10월 보도한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요구했다.[중략]

A씨는 이름과 사진을 내려 달라고도 요구했다. 는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반론과 함께 사진 삭제 및 익명 처리를 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신청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는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중략]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이 불법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강연마다 ‘동성애가 법제화하면 하나님이 불법이 된다’는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중략]

A씨는 2016년 총선 당시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세운 C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C정당의 ‘정강 정책 연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왜곡 정보를 버젓이 퍼트리기도 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A씨가 반론보도와 함께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만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A씨가 차별금지법 통과 시 성경이 불법서적이 된다거나 동성애 비판 표현만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연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언론중재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확정된 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반론보도와 함께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당시 중재부의 권고에 따른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A씨는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동성애 법제화’에는 동성애 처벌법 폐지·차별금지법 제정·동성애 옹호교육법이 통과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강연한 것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이란 문구를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기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보도문 제목과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처음 48시간 동안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실제 이행 보도문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재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정했음을 알립니다.

※ 본 조정 기일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 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조정대상기사 본문을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게재함



사례 2 2019서울조정266 정정청구

민간 노인요양원의 운영 비리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요양원의 외관을 방영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민간 노인요양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고수익을 낳는 사업으로 치부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일부 민간 노인요양원의 운영비 횡령 비리 등 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자막과 함께 신청인 요양원의 외관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 신청취지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요양원의 전경을 무단으로 방영하여 신청인 요양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돈벌이로만 시설을 운영한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일부 요양원 전경은 해당 보도와 무관하고 당사자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영한 것이다.
- 매매 컨설팅 업자의 요양원 수익 관련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

■ 조정결과

보도내용과 신청인 요양원은 무관하다는 정정보도 성격의 후속보도를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요양원 장면을 삭제하며 향후 재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일부 민간 노인요양원의 비리와 실태를 파헤친다.[중략]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 하나를 접했습니다. ‘요양원 3년이면 빚을 갚는다.’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전국에 노인요양원은 약 5,300개. 이곳에는 요양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노인요양원 안내판 여러 개가 눈에 띄니다.

이곳에 신축된 노인요양원은 무려 6개. 지금도 건물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인요양원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창업교육. 3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을 정도입니다. 노인요양원을 인수할 때는 권리금을 포함해 큰돈이 들지만 이 돈은 금세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컨설턴트는 자신이 몇 년 간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통계를 낸 것이라며 우리에게 문서 하나를 내줍니다.[중략]

노인요양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현행법상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요양원 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악용한 각종 비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일부 민간 노인요양원의 비리 등 운영 실태를 보도하며, “국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란 자막과 함께 C노인요양원의 외관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방송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프로그램 홈페이지 내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공지사항으로 위 보도문을 7일 동안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게시글로 유지한다.
- 홈페이지 내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및 TV클립 영상에서 신청인 요양원의 전체 외관이 노출된 장면 영상을 삭제하며, 피신청인 및 계열사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IPTV 서비스 등에서 이 사건 해당 영상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례 3 2019서울조정684·685/686·687 각 정정·손배청구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가 신청인 B신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는 약정서도 보지 못한 채 B신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수를 약정 판매해야 했으며 신문사-신문지국 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신문 밀어내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위 보도의 고발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조치를 받았고 공정위로부터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A씨의 허위 주장만을 토대로 신청인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갑질’을 한 것처럼 허위과장·편파보도 했으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조정대상기사는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불공정거래 논란이 벌어진 뒤 신문사에 ‘무혐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8월 1일 B신문사와 공급약정서를 체결했다. A씨는 “공급 계약은 본사·전임자·후임자 3자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본사에선 전임자가 해왔던 지대를 비롯한 모든 불공정 계약을 관행대로 떠넘겼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불공정거래에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약정보증금으로 150만 원도 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약정서 전문을 볼 수 없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A씨가 확인한 약정서 전문에 적힌 공급 기준부수는 210부 이상이었다. 약정서 제3조 ‘공급부수 및 판매방법’에 따르면 신문의 공급부수는 을의 의사를 참작해 갑이 정하며 을은 이를 전량 판매해야 했으나 현실에선 B신문사가 보내는 부수를 일방적으로 받고 지대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중략]

결국 A씨는 신문판매연대를 통해 그해 8월 B신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B신문사는 공정위에 보낸 답변에서 “지국 인수 후 부수확장을 통한 수익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 지대를 감액해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약정부수를 다 팔아 수익을 내야 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의미다. B신문사는 또한 “적극적으로 운영수지 개선에 협조했으나 A씨가 일방적으로 미수를 발생시켰으며 관할구역 내 지국운영자가 본인 외에 없음을 약용해 無지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중략]

그러나 공정위는 B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B신문사가 실제 구독자수보다 많은 신문을 강제공급 해 발생한 신문대금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등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무엇보다 “A씨가 계약체결일 당시 현재 공급부수만큼 공급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B신문사가 2015년 이후 실제 약정 부수보다 적은 부수를 공급하며 A씨와 사전협의 없이 신문 공급부수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신문 밀어내기’를 ‘사전협의’로 받아들인 대목이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B신문사가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인 듯 보도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B신문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게재면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 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4 2019광주조정29·30, 2019광주조정31·3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기관의 홈페이지와 시설 외관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영했어도 보도에 당사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지역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학교수련 활동은 불법인데도, 적법한 수련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신청인 수련원이 인근 리조트를 위탁 사용하면서 수십 곳의 학교 수련활동을 진행했다며, 신청인 수련원이 위탁 사용하는 리조트 건물과 수련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등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수련원은 위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담당 기자를 만나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미인증 시설'이라고 허위보도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 수련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고, 법정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조정결과

심리 당시 피신청인은 일선 학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 위한 보도였고 해당 리조트 건물 및 홈페이지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지역의 수련원은 신청인 수련원이 유일하며, 실제로 보도 이후 10여 건의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반박했다.

중재부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 수련원은 필요한 인증을 받아 법정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학교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A지역의 한 건물입니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1박 2일 이상의 학교단체 수련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30여 개 학교가 이곳으로 1박 2일 이상 수련활동을 다녀왔습니다.[중략]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지난 2013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망사고로 ‘학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수련활동은 콘도나 리조트가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지역에는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원이 24곳이나 있는데도, 일부 학교들은 이곳으로 수련활동을 다녀왔습니다.

A지역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리조트 등에서 수련활동을 금지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문이 나온 이후에도 학교들은 버젓이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서 확인결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개인·법인·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A지역 수련교육센터는 “본 시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관리 역시 법에 정한 바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진흥원에 보고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B뉴스> 프로그램에서 위 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본문을 낭독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되, 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면 상위 2번째 기사로 위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과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다른 기사의 제목에 사용된 활자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이 한다.

-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조정대상기사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5 2019서울조정957·958/959·960, 2019서울조정961·96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폭행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대학 운동부 감독인 신청인이 전지훈련 중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A학생을 폭행했고, A학생 측과 합의에 이른 후에는 경기 및 훈련에서 A학생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실업팀으로 이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회식 당시 A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A학생의 부상은 신청인의 폭행이 아니라 자해에 따른 것이며, 해당 사건 이후에도 A학생의 출전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A학생의 일방적인 제보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A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A학생의 자해가 있었으며, A학생이 후배에게 신청인이 폭행했다는 허위증언을 교사했다.
- A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경기 출전기회가 다수 있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을 뿐 악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대학배구연맹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폭행사건 이후에도 A학생에게 출전기회를 부여했던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신청인과 A학생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대학 운동 선수 A씨는 지난해 전지훈련 숙소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족이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방치됐고, 정수리 부위를 14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A씨 측은 감독의 회유로 합의를 써줬습니다.

해당 대학은 감독에게 서면 경고로, 대학연맹은 가벼운 출전 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심지어 3학년이던 A씨에게 지방 실업팀으로 옮기라고 강요했습니다.

A씨 측의 민원 제기로 열린 B지역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감독에게 금품수수 혐의로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폭행 건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 안건으로 다루지조차 않았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학 운동부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선수를 구타해 부상을 입혔고, 이후 해당 선수를 경기나 훈련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선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개최된 27경기 중 출전정지된 3경기를 제외하고 23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감독은 “대학연맹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음으로 인한 감독과 선수 간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쌍방 또는 일방의 폭력사건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뉴스 홈페이지에 스포츠 섹션 기사목록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조정대상보도 본문 중 <이후 감독은 출전기회를 주지 않았고> 부분을 삭제한다.

사례 6 2019부산조정28 정정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감사결과를 잘못 보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A도시 B구(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A도시 B구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적발했는데, 신청인 법인이 자산취득비로 개인차량에 주유비를 지출하고 운영비로 직원수당을 지출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법인은 위 보도의 지적사항은 법인 자체 경비 집행건에 관한 것으로서 B구의 감사결과 통보서에도 이 같은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B구의 감사 지적사항은 지방보조금이 아닌 법인 자체 경비에서 집행된 것으로서 법인 정기총회 및 이사회, 자체감사 승인을 받은 적정한 집행이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인 법인 관계자가 감사 결과 확인서 내용에 동의해 서명까지 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보도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신청인 법인임을 알아볼 수 있어 당사자가 특정됐고, 신청인 법인 관계자의 서명은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도시의 B구가 과거 방만하게 운영돼 온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가 집행한 24개 단체 34개 지방보조금 사업, 마을기업 등 10개소와 관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는 22개 단체 84건, 마을기업 등은 9개소 38건 등 총 122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발견됐다.[중략]

매년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C법인 역시 자산취득비 837만여 원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해 방치하는가 하면, 업무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 236만여 원을 지출하고, 운영비로 직원수당 546만여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지적을 받았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의 조정대상기사 “매년 1억5천여만 원을 지원 받아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B법인이 업무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 236만여 원과 운영비로 직원수당 546만여 원을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 지적사항은 지방보조금이 아닌 법인 자체 경비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위 보도문을 신문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사례 7 2019서울조정1156 정정청구

신청인과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를 왜곡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A도시개발조합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위원회 조정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 중재부가 A조합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일반 소송에서 ‘기각’에 해당하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고, A조합에게 취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해당 조정심리 당시 신청인 조합이 금전배상을 강력하게 원하고 반론보도 게재만으로는 분쟁을 종결할 수 없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이 이뤄진 것인데도, 마치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기사를 진실한 보도로 판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조합원들에게 그릇된 사실을 전달하고 신청인 조합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해당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청인 조합에 취하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조정불성립결정은 피신청인의 보도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 조정결과

이 사건 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 신청취지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본지가 최근 A지역의 도시개발현장의 파행 등 부정행각에 대해 고발 기사를 연속해서 보도하자, 도시개발조합장 등 부조리 일행이 본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 일반소송에서 기각에 해당하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도시조합 측에 중재신청 취하 명령을 내렸다.

A지역도시개발조합과 B지역주택조합은 본지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의 부조리한 과정과 B지역 주택조합의 허위 및 법리 위배 사항을 보도한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중략]

그러나 본지는 이에 대한 보도 원칙을 “기자가 확인한 사실의 기록,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인용의 기록, 정황적 근거에 의한 정리의 기록, 보도시점의 시사성 및 시의성에 따른 배경의 기록” 등에 대한 기사작성과 보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이 기사들은 사회의 악으로부터 선량한 민생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적인 사실 보도였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중재부 심리에서 도시조합측이 주장 하는 조합장 자격 문서와 관련해, 보관중인 자료에 편철된 인감증명 용도난의 법적효력 존·부존재 여부를 놓고 다투던 중 도시조합측이 내놓은 용도난 불필요 주장은 실정과 다른 점을 확인하는 등 도시조합의 허구 주장임을 결론 내리고 중재위는 중재불성립과 함께 도시조합 측에 중재취하 명령을 내렸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고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지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본지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에서 조합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취하명령을 받고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조합 측에 조정신청 취하를 명령한 사실이 없으며, 본지의 보도내용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결정이 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고방법

-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12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홈페이지 <헤드라인> 섹션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하여 게재한다.

사례 8 2019서울조정1238 · 1239/1240 · 1241 각 정정 · 손해청구

부친의 공로를 타인의 공로로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서훈 주관 부처의 확인을 근거로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날’을 맞아 독도지킴이로 살다간 A씨와 B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추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가 1981년 독도 주민등록지를 가장 먼저 옮기고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공로를, B씨는 A씨의 어선 선장으로 독도 생활을 시작해 2014년 독도 주민 최초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를 공고히 했고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A씨의 유족인 신청인은 B씨의 공적사항으로 기재된 998계단을 설치한 사람은 신청인의 부친인 A씨고, 신청인의 2018년 독도 주민 신청건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유족이 독도지킴이로 생활하게 된다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여 독도 주민 선정에 혼동을 주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B씨는 A씨 어선의 선장으로 독도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고,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든 사실도 없으며, B씨의 유족이 독도지킴이로 생활한다는 사실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물골’ 계단 설치 주체에 관해 분쟁이 있어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해양수산부가 공적조서에서 ‘물골’ 계단 설치의 공적을 A씨의 것으로 인정했기에 정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앞장섰던 A씨와 B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추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영원한 독도인’으로 살다가간 A씨와 B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중략]

A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가 함석으로 토담집을 짓고 어업 생활하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자 독도가 한국인이 사는 유인도임을 알리기 위해 1981년 10월 14일 독도에 주민등록지를 가장 먼저 옮기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는 독도 서도 전복 양식장, 수중 창고, 선착장을 손수 건립하고 동도 헬기장 공사에 참여하는 등 독도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다. 1987년 태풍으로 무너진 독도 집을 복구하기 위해 대구에 자재를 사러 갔다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간 독도 1호 민간인 주민으로 생활했다.

A씨 어선의 선장으로 1960년대부터 독도 생활을 시작한 B씨는 20여 년간 아내와 함께 독도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년 1월 독도 주민 최초로 기념품 판매 매출에 대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히 했고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들었다.[중략]

지난해 말 명예 퇴직한 B씨의 사위인 C씨는 31일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에 들어가 유일한 주민인 장모를 모시고 장인의 뒤를 이어 ‘독도지킴이’로 생활하게 된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인터넷판 및 지면판 조정대상보도에서 A씨와 함께 훈장을 수여받을 예정인 B씨가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훈장 포상을 주관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완공한 것을 B씨가 아닌 A씨의 공로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이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보도문을 신문지면 2면부터 10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위 보도문 제목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제목과 본문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언론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 본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박스 처리, 볼드 처리, 음영 처리 등 원 보도와 구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 다음 등)가 게시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위 보도문 본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요청한다.



사례 9 2019전북조정40 정정청구

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목재펠릿 제품의 하역장면을 보도하면서 이물질이 섞인 불량제품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하고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지역케이블방송사인 피신청인은 A지역의 항구 하역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원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릿을 하역할 때 날림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자석에 붙기도 해 순수 목재펠릿을 사용한다는 당초 방침과 다르게 이물질이 섞이거나 값이 저렴한 바이오SRF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의 하역 장면에 등장한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해당 제품은 적법한 검사를 거친 목재펠릿이었고, 순수 목재펠릿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역 근로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출처 불명의 펠릿이 자석에 붙는 장면이 이어 신청인의 수입제품 하역 장면을 방영해 신청인의 수입제품이 저품질의 바이오 SRF로 오인받게 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순수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데 반해 폐기물 바이오 SRF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는 취지의 하역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영상자료로 보도된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은 적법한 필요서류와 품질검사 과정을 거친 목재 펠릿 제품이었음이 밝혀졌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순수 목재펠릿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하역장 근로자들이 먼지로 고생하고 있어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차 심리 이후 양 당사자 간 입장 정리를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항구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재펠릿이라는 발전원료입니다. 희부연 먼지가 트럭 위를 뒤덮습니다. 순식간에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마스크가 없으면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순수 목재펠릿만 들어올 경우 날림먼지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순수 목재펠릿과는 달리 목재가 자석에 달라붙고 한 눈에 봐도 이물질이 섞여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중략]

폐목재가 들어간 SRF는 가격이 목재펠릿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중략]

이에 대해 발전소 측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순수한 100%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SRF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규정에 맞는 목재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후략]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뉴스 본방송, 해당 홈페이지 방송 다시보기 및 인터넷 블로그 상에 조정대상보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배경 동영상 화면 가운데 특정 수입업체의 선박 영상은 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편집 작업과정에서 착오로 오인하여 사용된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동영상 자료로 보도된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은 의혹이 제기된 SRF가 아닌 필요서류와 품질검사 과정을 재차 거친 적법한 순수 목재펠릿 제품이었음이 밝혀져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사례 10 2019서울조정1479 · 1480/1481 · 1482 각 정정 · 손해청구

야구 경기 기록원인 신청인이 자녀의 타율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협회 공식자료에 따라 자녀의 경기성적을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역의 B협회 소속 경기 기록원인 C씨가 자신의 아들 D군이 대 A지역 권역 경기의 기록을 도맡아 했고, D군의 지난해 고교 주말리그 A지역 권역 타율이 타 권역 경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 C씨가 경기 기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협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수십 년 째 야구경기 기록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조작이나 편파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모든 야구경기는 실시간으로 전광판과 기록지를 통해 노출되고 있어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자녀는 A지역 권역 소속으로 타 권역 경기에는 출전하지도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기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은 없다.
- 해당 기사는 고교야구의 출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도해 신청인과 자녀에게 피해를 줬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학부모가 자녀의 경기를 직접 기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도의 '타 권역' 표현은 신청인이 기록하지 않은 타 지역의 경기를 일컬은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협회의 진상조사는 복수의 임원을 통해 거듭 확인한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타 권역'은 '전국대회'를 뜻한다는 정확한 의미와 함께 D군의 전국대회 성적을 정정하고 신청인은 협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지역의 한 고교 야구선수 성적이 경기 기록원인 학부모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지역 B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소속 경기 기록원 C씨가 자신의 아들인 D군이 뒀 경기에 기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명을 요구한 협회 소속 한 임원은 “올해 대학을 진학한 E고교 야구부 출신 D군의 기록을 C씨가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협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주관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선수기록을 보면 D군은 지난해 고교 주말리그 A지역 권역 12경기에서 타율 0.255(43타수 11안타)의 성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타 권역 경기에서는 0.137(80타수 11안타)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문제는 지난해 D군이 경기를 뒀 A지역 권역 경기의 기록을 C씨가 도맡아 했다는 것이다. 고교야구에서 선수 기록은 프로지명과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C씨가 아들의 성적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A지역의 한 고교 야구선수 성적이 경기 기록원인 학부모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018년도 해당 학생의 경기실적증명서에 따르면, 보도에 언급된 타 권역 경기는 전국대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확한 성적은 44타수 8안타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경기기록원인 해당 학부모는 “편파적 판정과 관련하여 협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섹션의 기사목록 상단부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사례 11 2019경남조정66 정정청구

실제 제출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와의 통화만으로 준공서류가 위조됐다고 단정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자체와 B재단이 테마파크 개장 일자를 맞추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준공서류를 위조했고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준공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재단과 A지자체는 준공검사에 하수처리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개장 일자를 맞추기 위해 감리단에 압력을 행사하며 준공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지자체와 신청인 재단은 테마파크 하수처리시설을 준공처리한 사실이 없고, 하수처리시설은 정부에 신청한 준공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테마파크 개장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다 몇 차례 개장일자가 미뤄지면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신뢰할만한 취재원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실제 준공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의 통화만으로 '위조'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 정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C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의 개장이 울들어 수차례나 연기돼 의문이 증폭된 가운데,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지자체와 수탁 사업자인 B재단(이하 '재단')이 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위조된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 4월로 예정됐던 테마파크 개장이 계속 늦춰진 이유가 지금까지 지자체와 재단이 밝혀 온 '국도 미개통 및 안전성 점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부진 탓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중략]

취재 결과, 하수처리시설공사가 지난달 30일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는 그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달 23일자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지자체는 이날 제출된 책임감리의 준공승인원과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이 준공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준공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테마파크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실제 공사 중인 상태임에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준공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뜻한다.[중략]

이 공사의 책임감리사인 D엔지니어링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계약기간이 지난 6월 25일로 끝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7월 23일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점에서 볼 때 A지자체와 테마파크의 '압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A지자체와 B재단이 당초 올 4월 테마파크를 개장한다고 발표했다가 6월 → 7월 26일 → 9월 초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남 탓'(국도 미개통과 안전성 문제 점검)을 해 온 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후략]

보도 2

A지자체와 B재단이 수차례 연기 끝에 9월 초로 최종 발표한 테마파크의 개장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요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공사를 준공 처리토록 한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본지가 현장 취재한 지난 7월 25일까지도 관로매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책임감리는 이 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데 따른 준공조서를 7월 23일 발주처인 재단과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짜는 지자체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정부부처에 대해 각종 준공조서를 제출하면서 '실행계획대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시설물 설치가 끝났으니 오는 9월

초에 테마파크를 개장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시점이다.

현장 사정에 밝은 한 취재원은 책임감리사가 지난 6월 2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것도 주요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승인을 7월 23일자로 해 준 배경에 대해 재단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증언했다.[중략]

그런데도 재단과 지자체는 “개장일자 맞추려 허위 준공서류를 사용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사실 은폐를 위해 ‘꼬리 자르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두 기관은 지자체 의회에 대한 진상보고 및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감리단이 7월 23일 준공검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를 아직 재단에 통보하지 않아 준공 미처리 상태”라며 “또 하수처리시설은 이번 정부 준공확인 신청에서 제외했으므로 서류상으로 이미 준공 처리됐다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 조정대상기사 1 및 조정대상기사 2에서 A지자체와 B재단이 개장 일자를 맞추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관련 준공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B재단 및 A지자체에서 준공 신청할 때에 하수처리시설은 제외되었으므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준공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면 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위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12 2019제주조정11 정정청구

기사 본문은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사 제목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공연예술인들의 축제인 A축제를 주관한 B협회가 전년에는 팀당 200만 원씩 지급하던 쇼케이스 공연비를 올해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협회 회원사 및 관계자들에게는 수억 원의 숙박비를 제공했다며 B협회가 공연예술팀을 상대로 ‘갑’의 행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협회는 A축제 당시 쇼케이스 공연은 국고 지원 사업인 관계로 이중 지원이 불가해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모 단계부터 사전 공지해 모든 팀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축제에 참여했고, 쇼케이스 공연팀을 제외한 모든 공연비는 전액 집행됐는데도 ‘공연비 0원’ 제목 표현으로 인해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축제의 쇼케이스 공연은 국고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쟁형태의 공연이라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다.
- 쇼케이스 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공연비를 지급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기사에 앞서 보도한 기획기사에서 신청인 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쇼케이스 외의 공연은 공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이미 보도했고, 위 기사의 제목 표현과 달리 본문에서는 공연비 부지급 대상 공연을 ‘쇼케이스 공연’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위 기사 제목은 신청인 협회가 모든 공연에 대한 공연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계자들에게 호화 리조트 숙박비를 지원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A축제는 ‘공연유통 활성화, 공연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제다. 따라서 공연을 펼치는 예술인들은 이 축제의 ‘꽃’이며, 이들이 없다면 축제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A축제는 분명 공연예술이 주가 되는 축제인데, 쇼케이스 무대에선 35개 공연팀이 공연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점은 이와는 정반대로, 축제를 주최한 B협회 회원사인 전국 각지의 회관 및 공연장 관계자들에게는 4인 1실, 리조트 숙박의 기회가 제공됐다는 사실이다.

올해 축제에 참여한 35개의 쇼케이스 공연팀은 공연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땀 흘린 푼 못 받고’ 공연을 펼친 것이다.[중략]

작년 A축제 예산 9억1600만 원 중 관계자 숙식비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됐다.

작년 A축제의 경우, B협회는 쇼케이스 공연팀당 200만 원 수준의 공연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쇼케이스 공연팀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반면 관계자들에게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관계자 숙식비는 ‘억’단위, 예술팀 공연비는 ‘0원’인 A축제」 제목의 기사에서 A축제를 주최한 B협회가 회원사 및 관계자들의 숙박비로 2억여 원을 집행한 반면, 쇼케이스 공연을 펼친 35개 공연팀에게는 공연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축제에 참여한 공연팀 중 쇼케이스 공연팀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공연비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위 기사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대해 B협회는 쇼케이스 공연은 국고의 이종 지원이 불가해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모 당시 모든 공연팀에게 사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특집면에 48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 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할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 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상자 처리하여 이어 게재한다.

사례 13 2019부산조정61, 2019부산조정62(병합) 각 정정청구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A지역 대학 교수들의 친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출연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그 중 한 명인 신청인의 전공이 ‘한국근현대사가 아니라 미국 정치학’이라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의 전공이 한국근현대정치사임에도 미국정치학이라고 소개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도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의 전공은 미국정치학이 아니라 한국근현대정치사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출연자의 발언을 진행자가 정정한 바 있고, 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 발언으로 인한 책임은 방송사가 아닌 출연자 개인에게 있다고 항변했으나, 중재부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을 바로잡는 형식의 조정안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패널(연구소 대표): 말씀 중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끼리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 못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현대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본인도 사실은 전공이 미국 정치학이시거든요.

진행자: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으셨죠?

패널(연구소 대표): 근현대사가 본인의 전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 고도로 훈련된 분들만이 해야 된다는 건 본인 말씀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을 오히려 선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지난 N회차 방송에서 A지역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교수의 전공이 미국정치학이라는 패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B교수의 전공은 한국근현대정치사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위 보도문을 해당 코너 시작 직전에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표시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낭독한 동영상을 게재한다(해당 동영상도 통상적으로 조정대상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게시한다).

사례 14 2019서울조정2133 정정청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제보자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단체급식업체인 A사가 D국으로부터 수입해 유통한 냉동 수산물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는데도 익히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대응하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영양사를 해고했으며, 해당 영양사가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생충 수산물 유통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위 보도 이후 신청인 업체는 제보자인 영양사가 수개월 간 신청인 업체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 유죄가 선고되어 해고했고, 해당 영양사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모든 제품을 전량회수 및 폐기처분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관해 피신청인에게 정정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해 이 사건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사는 해당 영양사를 냉동 수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상습협박 및 공갈의 범죄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 A사가 구매한 D국산 수산물은 통과과정에서 검역을 거쳐 인체에 무해한 상품으로 적법하고, 이물 발견 당일 전량회수 및 폐기처분해 실제 시중에 유통한 사실은 없다.

■ 조정결과

심리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영양사의 범죄 행위로 해고했다는 사실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그밖에 A사의 사후 대응방식 및 해당 수산물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업체 A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 급식업체에 기생충 수산물을 유통하고도 그것이 문제되자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9월 A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로 단체급식을 조리하는 조리원 B씨는 수산물을 손질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수산물의 곳곳에서 기생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12월에도 계속됐다. B씨와 당시 해당업체 담당 영양사 및 다른 조리원들은 경악을 하고 A사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수산물은 C수산에서 수입하는 D국산 냉동수산물로 A사가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무려 세 번이나 반품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기생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납품하는 식재료에 기생충이 발견되면 문제가 된 수산물을 조사해 납품을 중단해야하는 게 유통회사의 책무인데 회사 측은 오히려 문제제기한 영양사를 타박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영양사의 입을 막으려했다. 게다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영양사를 해고하고 기생충 공치 문제를 한 직원의 일탈로 덮으려고 했다.[중략]

본지 취재팀은 당시 기생충 수산물 사건에 대해 A사 측에 물었다. A사 측은 처음에는 “당사는 기생충 수산물을 유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증거는 당시 물의를 일으킨 영양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영양사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단체급식업체 A사가 D국산 수산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을 해고했고, 인체에 위대한 수산물을 유통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사는 협박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이고, 법원도 해당 직원의 협박 및 공갈죄를 인정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A사는 이물 발견 당일 전량회수 및 폐기 처분해 실제 시중에 문제된 수산물이 유통된 사실이 없고, D국산 수산물도 통관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적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특집/기획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5 2019서울조정371·372·373 정정·반론·손배청구

언론사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저널리즘 관련 토크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 평가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평가지표를 매년 바꿔 객관성이 떨어지며, 평가 결과가 발표될 무렵에 평가 참여 대학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대학 평가와 광고가 관련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신문사는 위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당사 대학 평가는 광고와 무관하고 평가지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위 보도로 인해 20여 년 간 공정하게 진행해 온 대학 평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대학평가는 참가비가 없고 광고와도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대학 특집섹션 기사도 평가와 무관하다.
- 대학으로부터 광고 등 대가를 받고 평가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대학 평가지표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것이고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고, 대학 특집섹션에 홍보 기사가 실린 대학과 평가지표 간



높은 연관성, 평가 참여 대학의 진술 등을 참고한 진실한 보도이며, 신청인 언론사는 스스로 반론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는데다 반론권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진행자: 이번에는 해마다 나오는 언론사들의 대학 평가결과,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A신문사의 대학 종합 평가결과가 나왔고요. 지난달 23일에는 B신문사가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C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대학 평가 100위를 발표했습니다.

출연자 1: 세계적인 대학 평가들이 대개는 열몇 개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A신문사 대학 평가의 평가 기준은 지표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33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중에 일부는 연구, 일부는 교육인데 엄청나게 많은 지표를 막 섞어서 평가를 하니깐 그 평가 지표 중에 일부 어떤 특정 대학에 유리한 걸 점수를 좀 높이고 어떤 걸 낮춘다면 충분히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출연자 2: A신문사 대학 평가는 올해로 20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표가 모두 30개 정도 되는데, 사실 해마다 조금씩 이게 조정이 됩니다. 총점은 300점 만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학교들의 숫자인데요. 올해 평가의 경우에는 모두 57개의 대학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진행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학교가 신청을 한다.” 그럼 학교가 마음먹고 이 지표에 따라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객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중략]

진행자: A신문사 대학 평가팀 인터뷰를 하고 오셨다고요?

출연자 2: 첫 번째로 평가 지표를 매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 “이게 서열화가 아닌가?” 질문에 대해서는 “서열화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측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수치화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중략]

진행자: 언론사 대학 평가가 나올 때쯤 전후로 해서 대학을 홍보하는 광고들이 많이 실린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출연자 2: B신문사의 경우 C사의 아시아 대학 평가가 나온 직후에 ‘D’라는 특집섹션을 신게 됩니다. 여기에 각 대학들이 소개 되는데요. 이 대학들이 모두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국내 20위권

내에 진입한 학교들이었습니다. A신문사 경우에도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특집섹션을 통해 학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기가 평가결과 나오기 한 달 전쯤에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27일에는 8개면에 걸쳐서 대학 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연자 3: 이걸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나오네. 이제.

출연자 4: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출연자 2: A신문사 쪽에 “혹시 광고를 받지 않으시냐, 대학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 대학들을 상대로 광고를 받지 않으시냐?”라고 여쭙봤더니 “광고 같은 건 전혀 받지 않고 참가비 역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한 사립대와 국립대를 취재해봤더니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면) 사립대 홍보 담당자: “A신문사와 B신문사가 대학 특집 별지에 실릴 기사형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시나 정시 때마다 공문이 오고 담당자도 오는데 광고를 안낼 수가 있나요?”

다른 대학은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은 광고 한번에 2천~3천만 원 정도, 지방대도 7백~8백만 원은 내야 합니다.”[중략]

출연자 3: 언론사 대학 순위는 권력이자 상품이네요.[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A신문사의 대학평가가 광고의 영향을 받아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신문사는 대학평가에 참가비가 없고 광고와도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대학평가 지표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것으로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지표 항목을 조정할 사례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 프로그램 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팝업으로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과 유튜브·페이스북 프로그램 채널에 게재되는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화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사례 16 2019서울조정398/399 각 반론청구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반복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학교의 비리 사실을 공익제보한 A교사에 대한 B학교의 파면처분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B학교가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다시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 2회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학교는 A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해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는데도 A교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A교사에 대한 징계는 A교사의 그간 행위를 참고해 징계양정을 재심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다.

■ 조정결과

대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 일부와 신청인 학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공익제보자’인 A교사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지난 주 학교로부터 네 번째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교사는 지난 2012년, 소속 학교의 비리 사실을 공익 제보한 뒤 학교로부터 여덟 차례나 고소·고발에 시달렸고, 해고와 복직을 세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학교의 파면 처분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지만, 학교는 이번엔

‘파면’이 아니라 ‘해임’으로 다시 A교사를 해고한 겁니다.

재단 측이 내린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번번이 취소되고 있어 결국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사는 <저녁 뉴스> 및 <정오 뉴스>에서 “2012년 B학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던 A교사를 ‘파면’한 학교의 처분을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자 학교가 다시 ‘해임’으로 A교사를 징계한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학교는 “A교사의 ‘파면취소’ 처분과 관련해 교원정치활동으로 인한 교원노조법 위반 등 여섯 가지의 징계사유를 참고해 징계양정을 재심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A교사의 근무성적, 반성이나 개전의 정, 생활태도 등을 근거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 보도문을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을 아래자막으로 표시하고, 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 프로그램 다시보기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들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17 2019서울조정497·498·499, 2019서울조정500·501·502(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취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신청인 측 반론을 보충적으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C공사가 노조파괴 전문인 D노무법인 노사혁신팀장 출신 B노무사에게 법률대리를 맡겼고,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B노무사 등 3명이 D노무법인 폐업 직후 설립한 곳이라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과 관련없는데도 ‘D노무법인 후신’으로 표현하면서 기사 제목에서 ‘노조파괴법인’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보직을 맡은 사실이 없고 A노무법인을 설립한 주체도 아닌데도 A노무법인 명칭과 B노무사의 성씨를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됐다고 관련 내용의 삭제 요청과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장을 지내지 않았고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이 아니다.
- A노무법인과 B노무사는 노조파괴 업무를 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D노무법인에서의 B노무사의 직책은 수정할 수 있으나 취재 당시 B노무사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는데 거부했고 ‘A노무법인이 노조파괴법인’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표현 일부를 수정하고 신청인들의 반론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C공사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D출신 노무사에게 법률대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노무사는 전날인 10일 밤 사임했으나, 노조는 올 들어 심해진 노조탄압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그간 계약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C공사노조와 C공사에 따르면 C공사는 노동자가 낸 부당징계와 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으로 B노무사를 지정했다.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A노무법인 소속이다.

D노무법인은 14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168개 기업을 컨설팅한 노무법인으로, 지난 2012년 10월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으로 불린다. D노무법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B노무사 등 3명이 폐업 직후 A노무법인을 설립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기사수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노무법인 명칭과 노무사 성씨 부분을 각 A노무법인, B노무사로 수정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으로 불린다. D노무법인에서 주요보직을 맡았던 B노무사 등 3명이 폐업 직후 ‘A노무법인’을 설립했다.” 부분을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에서 근무하던 노무사 중 3인이 소속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노무법인 ‘A’ 소속이다.”를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 A노무법인 소속이다.”로 수정한다.

보도내용

본지는 “노조파괴 법인, C공사 대리한다니”라는 제목으로 A노무법인과 B노무사에 대해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이 아닌 별도 신설 법인이며 C공사의 노조 파괴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사례 18 2019서울조정581·582·583 정정·반론·손배청구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정부출연기관인 C연구소에 전임 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공익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던 기관장 운전원이 새로운 A소장이 부임한 후에도 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리운전 기사가 기관장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이 C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운전원 B씨에게 기관장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B씨를 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기관장 차량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운전원 B씨는 C소장 취임 이후 다시 기관장 차량운전 업무로 복귀했고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 신청인은 B씨가 노조지부장임을 밝힌 이후에도 기관장 차량운전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운전원 B씨는 연구소 규정상 시간외 수당 수급대상자가 아니므로 표준근로시간을 벗어난 운행이 잦은 기관장 차량운전 업무를 강요할 수 없어, 기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A소장이 직접 운전하거나 불가피하게 대리운전 기사를 활용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취재 당시 신청인이 운전원 B씨 대신 대리 기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B씨가 노조지부장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기에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이 미흡하다는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게재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부가 반론보도문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문재인 캠프 출신 A소장은 자신이 타는 관용차 운전을 직원이 아닌 외부 대리기사에게 맡겼다. 기존 기사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리기사를 이용하니 국민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셈이다.[중략]

또한 A소장은 B씨를 업무에서 ‘배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전원인 B씨에게 소장 관용차가 아닌 업무용 차량 운전을 맡겼다는 것.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것도 한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다시 반박했다.[중략]

B씨의 업무배제는 부당노동행위, 세금 낭비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공익신고자다. A소장은 그의 노조 지부장 자격을 문제 삼지만, B씨에게 노조는 공익신고자 불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결국 A소장은 ‘갑질’ 논란은 물론이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을 수 있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이전 정권에서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던 C연구소 기관장 운전원이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C연구소 측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지부장이 기관장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운전원이 수당 문제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어 출퇴근시간 위주로 대리기사를 사용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상단에 게시하도록 하고 48시간 이후에도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위 보도문 중 ‘이에 대해’ 이후 부분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아래 부제목 형식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C연구소측, “노동관계법에 따른 조치였을 뿐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준 것 아냐”]



사례 19 2019경기조정90/91 각 정정청구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비판 수인한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보다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교육청이 특수분야 장학사를 필요 이상으로 선발해 대기발령한 뒤 채용목적과 다른 분야 업무에 발령했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기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며 ‘정책국’을 신설해 현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집중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교육청은 각종 법규에 따라 인사정책 및 조직개편 등을 실시하고 교육감의 권한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도 “갑질”, “주민소환”, “제2의 최순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위 보도로 인해 교육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장학사는 선발 후 6개월~1년 6개월 정도 대기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발 시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특수 장학사 선발을 확대하고 있다.
- ‘정책국’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교육감을 보필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들은 인사정책 및 조직개편 경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신청인 교육청은 비판 수인한도가 큰 기관이므로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보다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제안,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A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인사로 인해 본청 교육 행정 관계자들의 불만이 한창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불만 대상인 시 교육청의 터무니없는 인사로는 보직 없는 특수 분야 장학사를 대책 없이 뽑아 놓고 이렇게 1년여 방치(?)됐던 교사를 B교육감이 들어서자 바로 비특수분야의 일반 장학사 업무에 발령, 이번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중략]

지난 2015년 전임 교육감은 당시에 전교조 출신의 장학사 선발을 위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한 장학사 선발’이란 지적과 ‘이미 내정된 장학사 선발’이란 추문이 난립하는 가운데 7개 분야에서 특수 분야 장학사 선발을 강행했다.[중략]

그러나 문제는 이들 장학사가 아니라 2017년 특수 분야 장학사로 선발된 인력이 1년을 미발령됐다가 지난해 9월 1일자로 특수 분야가 아닌 비분야에서 일반 장학사로 발령돼 근무한다는 사실이 특수분야 장학사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이다.[후략]

보도 2

[전략] A시교육청은 올해 시 교육청 조직을 기존 2국에서 ‘정책국’을 새로 확대 편성해 3국 2담당관으로 변경했다.[중략]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 복지 기능과 교육정책 연구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말뿐이다.”라며 “이번 조직 확대는 주장과는 달리 교육국의 중요 기능을 가져 오고 행정국의 조합 관련 기능을 가져와 관리가 편리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편성된 정책국의 주요 업무나 보직에는 대부분 교육감의 (개인 관련)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조직은 개인 입맛에 맞는 권력 집중형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중략]

지난 3월 1일자로 신설된 ‘정책국’에는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8개 분야의 특수분야 장학사 선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발된 장학사 15명 가운데 7명의 장학사가 집중 편성돼 있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기사 1, 2에서 A시교육청이 특수분야 장학사를 대책없이 뽑아 1년여 동안



대기시킨 뒤 비특수분야의 일반장학사 업무에 발령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며, 신설한 '정책국'에 현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파견교사를 집중 배치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교육청은, 장학사는 A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청 수급에 따라 보통 6개월~1년 6개월가량 대기 발령을 거친 뒤 결원 발생 시 총원하고 있고, 장학사의 부서 배치는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며, 장학사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평가 대신 면접평가의 비중을 늘리고 특수분야 장학사를 확대 선발하는 것이 추세로서, 특정 단체 소속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은 2018. 2. 교육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거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A6면에 위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 제목활자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0 2019대전조정32 반론청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피신청인 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후속보도 형태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A부처는 부처가 발간하는 월간지에서 2019년도 부처 업무계획을 전하면서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을 대폭(107%)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단체는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가 모인 단체로, 약 50만 명의 유공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대폭(107%) 인상했다고 보도해 사실관계가 호도됐다고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은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전년 대비 3.5% 인상된 6·25전몰군경 승계유자녀 수당인 109만 원과 비교하면 23.5% 수준에 불과하다.
- 신청인 단체는 향후에도 A부처에서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지난 발행 잡지에서 이미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액수를 보도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중재부는 유의미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피신청인 부처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후속보도 형식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A부처는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략]

저소득자 등 보훈가족의 여건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인상해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을 대폭(107%) 인상하고 생계 곤란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을 5만 원 증액하고 대상을 확대한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기사에서 A부처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대폭(107%) 인상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승계유자녀들이 받게 된 실제 수당 액수는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 인상됐음을 알려드립니다.

A부처는 향후에도 국가보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방법

-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최초 발행되는 잡지 3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글씨크기 및 글씨체로 한다.
- 위 잡지가 발행된 후 지체없이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정책면에도 게재하되, 제목을 ‘신규승계유자녀수당 107% 인상 :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로, 본문의 글씨크기 및 글씨체는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글씨크기 및 글씨체로 하여 최초 게재시점으로부터 72시간 동안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72시간이 지난 후에는 DB에 저장해 검색·제시되도록 한다.

사례 21 2019부산조정32 정정청구

의혹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도한 데 비해 당사자의 해명은 형식적으로 반영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유도회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들이 행정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관장들을 조사하고 징계 감면 등을 미끼로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회장의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유도회는 모든 행정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위력을 행사하거나 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적이 없으며,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한 것은 임원들의 공무로 인한 개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의혹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매트 반납 공문은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친 것이다.
- B씨가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거나 발전기금 납부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 이사회가 유도회 공적업무로 인한 개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을 승인한 데 따라 현 회장의 소송비용을 유도회 공금으로 집행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장을 보도했을 뿐이고 며칠 뒤 열린 신청인 유도회의 기자회견 내용도 보도했기에 신청인의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유도회가 피고발인 신분이고 보도 중 신청인 유도회에 관한 의혹 부분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데 반해 신청인의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 유도 관련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 40여 명은 A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유도회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중략]

이들이 공개한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A시유도회에서 통칭 ‘전무이사’라고 불리는 B씨가 사무장을 통해 부산아시아안게임대회 후 지원 매트 반납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어 현 회장의 최측근인 A씨는 A시유도회 이사회에서 전무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대한유도회에서는 다른 비리사건에 계류 중인자로서 유도회가 상정한 안건을 승인해주지 않아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사회에 참가하고 공문을 보내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A시유도회 보직까지 겸임하는 B씨가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체육관 관장 7명에게 2년간 자격 정지를 내린다고 위협하고 발전기금 300만 원 내면 집행유예 2년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흘려 해당 관장들이 괜한 분란을 만들면 손해라고 생각해 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유도회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 사례로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들이 행정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관장들을 조사하고 징계 감면 등을 해 준다고 얘기를 흘려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회장의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유도팀 소속 선수는 검직금지 등으로 코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감독의 동의하에 A시의 모 대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학부모들에게 100만 원 상당을 급여로 받아 왔다는 주장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시유도회는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가 공문 발송 등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보복차원에서 행동하거나 징계 감면 등을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에 유도회 비용을 사용한 것은 유도회 임원들이 공무로 인해 개인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청유도팀 감독과 해당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가 모교 후배들과 합동 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기능과 기술을 가르친 바 있으나 감독의 동의나 묵인 하에 코치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섹션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기사목록 첫 페이지 상단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지역 섹션과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22 2019서울조정1385 · 1386, 2019서울조정1387 · 1388(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정부 정책에 관한 공공연한 의혹 또는 소문을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이 아닌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정부가 2019년 대북 식량지원을 보내기로 한 쌀은 2017년 정부의 대량 매입 분으로, 정부의 대량 시장격리로 인해 2017년 쌀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고, 시장격리 당시 대북지원용이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공교롭게 2019년 대북 식량지원에 2017년산 쌀이 활용되어 정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부처는 2017년 쌀 시장격리 당시 국회에서 대북지원용이라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없고 대북지원계획과 무관하게 쌀 시장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최근 3년간 이뤄진 해외원조에도 통상 비축 2년차 물량을 활용해왔기에 2017년 쌀 시장격리와 이번 대북식량지원은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정부의 2017년 쌀 시장격리 당시 국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용이라는 의혹은 공식 제기된 바 없음
-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발표 당시 2017년산 쌀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최근 이루어진 해외원조에도 보관 2년차 물량을 활용해옴
- 2017년 쌀값은 1996년 수준보다 하락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는 불가피했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2017년 당시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발언 사실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며 진실한 보도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소문에 관한 보도이고 쌀 시장격리와 대북지원

간 무관함을 알리는 것이 신청인의 핵심 주장이므로 이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을 권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쌀 5만t은 2017년 수확한 것이다. 정부는 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이는 쌀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중략]

정부가 2017년산 쌀을 대량 매입했을 때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쌀 가격이 사상 최고인 19만 원대를 기록하자 인터넷과 SNS 등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몰래 보내 창고에 공공비축미가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정부가 쌀을 매입한 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이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이 공공롭게도 대량 매입으로 가격 폭등의 단초가 된 2017년산이라는 게 알려지며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2017년 쌀 가격폭등의 단초가 된 정부의 쌀 대량매입과 올해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관하여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 보유 양곡의 수급, 비축미의 품위 등을 고려하여 2017년산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이루어진 해외원조에도 보관 2년차 물량을 활용해왔으며 2017년 쌀 시장격리와 이번 대북식량지원은 무관함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유통된 쌀값은 과거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시장격리, 쌀 생산량 감소, 농가의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쌀값이 상승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지면 <경제>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경제>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최초 48시간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사례 23 2019서울조정1785 · 1786 정정 · 손해청구

성명서의 진의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의견표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중재부의 판단에 근거해 상세한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역에서 열린 ‘반일 종족주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A대학교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과장됐다고 발언해 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대학 동문회도 입장이 둘로 갈려 총동문회가 해당 교수의 발언을 친일 행위로 규정한 데 반해 C동문회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C동문회는 성명서 및 담당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명서의 목적은 해당 교수의 발언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교에서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자를 공격하는 전체주의적 마녀사냥을 지양하자는 취지였음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해당 교수의 발언을 반대하는 동문의 인터뷰와 상반되는 입장이라며 C동문회의 인터뷰를 삽입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조정대상보도의 A대학 C동문회는 해당 교수의 발언에 찬성 또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학자의 견해를 학문적 토론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고, 학자 양심을 보장하고 마녀사냥을 지양하자는 C동문회의 진의가 왜곡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논쟁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 동문회의 입장에 대해 ‘지지’라고 표현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동문회의 의견표명을 과장되게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신청인이 제안한 반론보도문 내용을 신청인이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역 시민단체가 A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학 특정 교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9일 A시에서 진행된 ‘반일 종족주의’ 출판 기념회.

이 자리에 참석한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두 명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중략]

동문회도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학과 총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수의 발언은 친일 행위라며, 즉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B / A대학 해당 학과 총동문회 회장

“책에 대한 반론이나 잘못된 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체계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책 팔이’에 나섰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 교수의 발언에 찬성 의사를 밝힌 해당 대학의 C동문회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해당 교수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D / A대 C동문회 사무총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열린 토론이나 학문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언어폭력이나 인격 비하로 대처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A지역 9시 뉴스를 통해 방송된 <대학교수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A대학교 C동문회 측은 해당 교수 발언에 찬성 또는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학자의 견해를 학문적 토론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방법

- 조정대상 프로그램 방송 중에 위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로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자막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단,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조정대상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내 A지역 뉴스 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보도영상 및 위 보도문을 통상의 방식대로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A지역 뉴스 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4 2019서울조정1856 · 1857 정정 · 손해청구

장기 미제사건의 부실수사를 비판한 보도에서 국과수 감식결과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해석차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장기 미제 살인사건에 관해 방송하면서 유력한 용의자 A목수가 있음에도 경찰이 알리바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고 현재까지도 수사 의지가 없으며,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B씨의 신발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당시 해당 사건 수사관 또는 미제사건수사팀 담당 수사관인 신청인들은 위 보도는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신빙성이 결여된 제보자의 진술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A목수 및 과거 담당 형사들인 신청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신청인들이 부실수사를 했고 현재까지도 수사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목수는 범죄 혐의가 없다.
- 담당 경찰관들은 다양한 수사를 진행해 유력 용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B씨의 족적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씨의 알리바이 존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데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족흔적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B씨의 족적과 현장 족흔적이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을 뿐 '일치'한다는 기재는 없으며,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고의로 편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 결과, 용의자 B씨의 족흔적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해석하는 데 양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지가 있는 점,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 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인적사항과 알리바이가 적혀 있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공백이 많은 30대 A목수입니다. 사건 발생 전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 저녁 6시 10분 경부터 A목수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얘긴 겁니다.[중략]

그가 공사장 인부들 중에 유일하게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른 인부들과 달리 범행과 손목유기까지의 35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검증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중략]

[제보자] “화장실 쪽 어디예요?”하고 존댓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같이 좀 가달라고, 며칠 전에 봤던 공사장 아저씨”[중략]

확실한 물증처럼 거론됐던 족적은 국과수 감식결과 일치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중략]

[신청인 C] “긷는 거야, (사건이) 안풀리니까 긷는 거고요, 그런데 왜 (취재를)하러 다니세요, 몇 년 전에 다 태웠어요, 수사 안한다고 그래서 다 태웠어요.”[중략]

[신청인 D] “하아,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사람이 잊고 편안하게 사는데 아픔을 다시 또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중략]

[신청인 E] “심부름만 하던 때라니까요 그때는. 복사 한 1년 해야 돼요. 일단 저는 기억이 없어요.”[중략]

[신청인 F] “1월에 와서 기록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사건을 저희가 검토도 못한 상태거든요.”[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용의자 B씨 외 다른 용의자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력한 용의자 B씨의 신발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은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유력한 용의자 B씨를 특정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직접증거 부족으로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 중이며, 국과수 감정 결과 족적은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 2개 정규회차 방송일 중 택일하여 해당일 방송 말미에 위 보도문을 표시하되,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활자체 및 크기로 화면 중앙에 최소 7초 간 계속해서 표시하며 배경화면은 보도문 활자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계열의 단색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보도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 2019대구조정80·8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과 소송 중인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관피아’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제보 업체의 진술에 근거해 A공사 간부 출신이 대표인 B업체가 시공 능력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고, 10여 년 간 A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를 싹쓸이식 하청을 받고 있어 연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시공 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도 미루고 있어 ‘관피아 존재’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B업체는 연 평균 매출액이 20여억 원에 이를 뿐 A공사로부터 연 100억 원의 하도급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A공사의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경우도 많았으며 A공사의 비호를 받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당사와 공사비 지급건으로 소송 중인 업체의 일방적인 제보만으로 허위사실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업체는 A공사로부터 100억 원 하도급을 수주한 사실이 없다.
- A공사로부터 비호를 받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제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를 A공사 간부 출신이 만든 업체가 장기간 싹쓸이식 하청을 받아 “A공사의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씩쓸이식 하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B업체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으나 잔여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재하도급업체는 “B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받을 공사금액을 확인조차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 지나자 상법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업체는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잔여공사비가 10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하고 “A공사에도 관피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B업체 대표 C씨는 A공사의 간부출신 퇴직자로서 2008년 회사를 설립해 A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면서 한때는 연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업체가 A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A공사에서 발주해 입찰한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연 100억 하도급을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A공사가 아닌 이외 업체들로부터 설립 이후 연평균 22억 7,300만 원의 하도급을 수주했으며 A공사에서 뒷선이 비호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또한 B업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며 A공사와는 아무런 직접거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사는 “2008년 A공사에서 명예퇴직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11년 동안 B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A공사로부터 퇴직 후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현재 기사를 제보한 업체는 B사와 소송 중에 있는 업체로 제보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본보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B업체의 대표에 대해 ‘관피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A공사와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 보도문 제목을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종합 섹션 내 주요기사 코너(3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한다. 24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6 2019서울조정2195/2196 각 정정청구

기관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하고 제목 및 본문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부적절한 외유성 연수로 논란이 됐던 지역 군의회 사례를 언급하면서 A시 교육청이 주관한 혁신학교 교사들의 국외연수 일정이 주로 관광명소 방문으로 채워져 있고 교육기관을 방문한 시간은 5박 7일 일정 중 9시간에 불과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교육청은 국외연수 도착 첫날이 일요일이라 공식 일정을 수행할 수 없어 자비로 관광명소를 방문했던 것이고,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4일 정도에 불과한 짧은 일정 중에 오타와교육청 및 8개 학교 등을 방문하는 데 17시간 이상 소요됐는데도 왜곡·과장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나이가가라 현장탐방은 국외연수 도착 첫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관 방문이 어려워 자비로 진행된 활동이었고, 문제의 지역 군의회의 외유성 출장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 실제 4일 정도의 짧은 연수 기간 동안 공식 일정에 소요된 시간은 17시간 이상으로 국외연수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는 부실한 연수일정 편성에도 불구하고 사전방지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보도로서,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외유성' 연수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기관 방문시간은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반론보도 및 기사수정에 관한 중재부의 권유를 바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과 함께, 다시보기 영상 삭제, 기사 제목 수정 및 군의회 관련 내용 삭제 등 다양한 이행사항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얼마 전 A시 교육청 장학사와 혁신학교 교사 20명은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캐나다 공교육의 성공사례를 보고 혁신학교 정책을 성찰한다며 예산 8,000만 원을 썼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고 5박 7일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 방문은 통틀어 9시간뿐이었습니다.

토론토 시청과 같은 관광명소는 꼬박꼬박 들렀는데 정작 보고서 말미엔 일정이 너무 많았다고 적혀 있습니다.[중략]

공무로 연수를 갈 때 관광은 하지 못하도록 출국 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A시 교육청은 올해 심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위 보도 관련, A시 교육청은 “나이아가라 현장탐방은 국외연수 도착 첫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관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인 자비부담 활동이었다. 현지에서 시차, 공휴일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4일 정도의 짧은 연수 기간 동안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등 8개 기관 방문 및 공식토론에 소요된 시간은 17시간 이상 진행되어 국제교류 국외연수 취지에 맞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해외연수 논란… 국외연수 지침 필요”로 수정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지역 군의회 사례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사례 27 2019서울조정2460·2461 정정·손배청구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노조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호텔에서 해고된 B 전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 신청인 호텔이 친 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단체협약을 폐기하는 등 고위직인 사돈과의 관계를 이용해 노동탄압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호텔은 복수노조가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을 뿐 신청인 호텔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사돈인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 선고됐는데도 특정 인사와 사돈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노조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노동법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돼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복수노조가 설립됐을 뿐 회사가 노조 설립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졌을 뿐이다.
- 신청인 호텔은 전 대법원장과 무관하고,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 판결은 해당 대법원장 퇴임 후에 선고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노조 측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를 표명했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을 수정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호텔노조 B 전 위원장이 호텔에서 해고된 지 1150일째. 시민사회가 A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A호텔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친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 노조 교섭권 박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 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탄압에 나섰다.

또한 사측은 2015년 1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조 활동을 주도한 B 전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 전보, 임금 삭감, 사무실 출입 제한, 직원 식당 이용 금지 등 조치를 했다. 이후 A호텔은 2016년 4월 B 전 위원장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현재 B 전 위원장은 1150일째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A호텔은 사법농단 사업장이기도 하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C인사는 A호텔 D 회장의 사돈이다. 노조는 D 회장이 사돈 관계를 이용해 노동 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해 9월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기에 복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 전 A호텔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은 노조 관련 노동법 개정에 맞추어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회사가 개입한 적이 없으며, B 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선고되어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을 “노조, “A호텔 회장, 사돈인 C 인사 힘으로 노동 탄압”으로 수정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송한다.

사례 28 2019광주조정84·85 정정·손배청구

지역아동센터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보도한 데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반론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B시 지역아동센터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A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하는 파행 운영은 설치자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야 하는 개인신고 시설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설들의 반발로 당국이 이를 2년을 유예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매매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B시 지역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의 연합단체로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모든 센터에서 발생한 것처럼 일반화해 명예가 훼손됐고, 설치자와 시설장을 일치하도록 한 지침은 필요 사항이 아닌데도 불법집단으로 매도됐다며 정정보도 및 3억1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소관 부처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및 개인 신고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정확한 자료에 기반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A단체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는 A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신청인 단체의 반론을 게재하겠다고 밝혀, 신청인 단체가 이를 수용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역아동센터 비리에 대한 A단체 입장문 [전문]

[전략]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횡령과 파행적 운영의 문제가 일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중략]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해야 하는 개인신고 시설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본다. 시설장 변경 허가는 가족경영, 부적절한 시설장 임용, 사고파는 행위 등의 비위가 일어나는 원인이다.[중략]

우리는 B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B시는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 일치를 명했다.

그러나 시설들의 반발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설 매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B시는 개인 신고 시설장 변경을 불허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 가능성에 대해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민단체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시 지역아동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연합단체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① 우선 지난 해 모 방송에서 문제제기를 한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 시설들은 2019년 10월 말경 자진 폐업 신고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B시 지역아동센터 단체 소속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보도를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아동 돌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② 시설장 변경 허가는 지역아동센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격 및 경력 등으로 자격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시설장 변경으로 인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으며, 시설 대표자가 시설장을 고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③ 현행 법령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유고시 등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소정의 기준을 준수하고 신규시설로 신고하면 기존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보장과 아동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아동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④ 보건복지부의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개정사항 중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 일치”의 의미는 ‘납세의무자, 통장 명의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주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보조금 등의 수령을 위한 금융계좌의 개설 및 고용주로서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A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시설 매매’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⑤ B시 지역아동센터 단체는 2019년 6월부터 B형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자 B시 및 관련 기관들과 매월 1회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인권면 위에서 2번째 기사로 위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사례 29 2019경기조정15·16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무혐의 처분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청 공무원 A씨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에도 같은 행위로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에 언급된 피의사실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마치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됐고, 감봉처분을 받은 건은 해당 사항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추후보도 및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위 보도에 언급된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몰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 조정결과

심리가 개최되기 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해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동료의 신체를 몰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7년도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인 것이 밝혀졌으며, 그 이전에도 몰카를 찍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30 2019서울조정614·615/616·617 각 추후·손배청구

전직 보육교사의 제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복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원생에게 막말을 했으며 전날 남은 음식을 먹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어린이집 전직 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신청인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도돼 결국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신청하기에 이르렀다며 무혐의 처분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 및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주장에 따른 편파보도를 했다.
- 검찰 수사 결과, 보도된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추후보도를 게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의 피해를 고려해 신문 지면에도 무혐의 처분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를 각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을 복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은 방에 방치하고 “지능이 낮다.”고 막말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해당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에 따르면 B어린이집 원장 C씨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



까지 오른 지난 달 16~18일 에어컨을 끄고 3, 4세 반 수업을 진행했다. 초복인 17일에도 창문만 열어놓고 수업해 일부 원생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방에서 낮잠을 자 땀을 뻘뻘 흘린 원생도 있었다. 에어컨은 보육교사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19일부터 가동됐으나 설정 온도는 27~30도였다.

C씨가 원생에 대한 막말을 하고 전날 남은 음식을 먹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육교사들 말을 종합하면 C씨는 보육교사나 보조교사에게 특정 원생을 가리키며 “OO은 사제야다.” “XX는 밥을 안 먹어 지능이 낮다.” 등 막말을 했다.[중략]

일부 학부모는 C씨가 원생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B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두 달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 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과 보육교사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단 결과를 검토한 뒤 원장(C씨)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며 “그런(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막말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지면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크기 및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상단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박스처리,

음영처리, 볼드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게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네이버, 다음 등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게시한 기사 하단에도 위 보도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요청한다.



사례 31 2019서울조정1507 추후청구

무혐의 처분 받은 혐의사실과 관련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항고 기각 결정에 따른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역에서 여러 개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대표가 직원에게 수면마취제를 섞은 술을 먹여 성폭행했고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이미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적시한 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

■ 조정결과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열람 차단 조치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해당 미용실 대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유추 가능하도록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되어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지난 7월 5일 피해자의 항고 및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바 무혐의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32 2019대전조정79·80 추후·손배청구

보도에 언급된 대학 교수의 갑질 행위 중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방송 및 유튜브에 추후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대학교 학과장인 신청인이 조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의 성적을 낮게 줘 졸업을 막았고, '카드깡'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하려고 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조교의 일방적인 허위제보만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편집해 신청인이 갑질 행위를 했다고 보도되어 모든 강의가 폐강되는 등 교육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추후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폭언 및 명예훼손, 학과운영비 횡령, 협박, 성적조작 및 졸업지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지방 검찰청 수사결과 지난 4월 29일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고, 9월 19일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른 후속보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조교 B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B씨가 언론에 제공한 사실의 중요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의혹에 관한 사실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방송 및 유튜브 공식 채널에 추후보도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 지역의 한 사립대에서 조교를 맡고 있는 B씨.

B씨는 2년 동안 학과장 C교수가 술한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의 성적을 낮게 주라는 등 성적 조작은 물론, 본인이 출근도 안 하고, 대리 결제를 강요하며 사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겁니다.[중략]

심지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C교수(녹취 내용)]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까 내가. 진짜로. 조현병 무지하게 많아. 너 조현병 아냐?”

갑질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은 내용을 정리한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폭로한 조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 지역 모 사립대 학과장 C교수가 학과 조교 B씨를 상대로 성적 조작,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A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해당 교수의 성적 조작, 폭언과 협박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법원에서도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되,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아래에 위 보도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함).
- 위 항에 따른 방송이 끝난 이후 지체 없이 피신청인 유튜브 공식채널에 방송 영상을 업로드하며, 이 영상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사례 33 2019서울조정82 손해청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SNS글을 사용한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변호사가 해외 순방중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비판한 SNS글을 게시하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한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과 성명이 노출된 SNS글을 캡처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성명과 프로필 사진에 대한 신원 보호 조치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SNS에 게시한 글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알려지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위 보도문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신청취지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포털사이트에서도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4 2019서울조정205·206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촬영·공표한 사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정보통신망에 매개된 사실을 인지하는 대로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진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에 관해 보도하면서 국방부 앞을 지나가는 현역 군인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노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국방부에 파견된 군 간부들로서, 우연히 기자회견장을 지나친 것일 뿐인데 ‘군 관계자’라는 표현과 함께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형 포털 메인화면에 게시돼 마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로 오해받게 됐다며 사진 삭제와 함께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들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사진 속 인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기자회견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들을 군 관계자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후 즉시 사진을 교체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이미 확산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과 함께, 포털사이트 및 각종 인터넷 기반 매체에 사진이 매개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열람·검색 차단을 조치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 보도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청인들 사진]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 국방부 산하 심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인들 초상을 촬영한 사진이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진을 매개한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 사진의 열람·검색을 차단할 것을 전송한다.
- 향후 각 신청인에 의해 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에 매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일 내에 해당 사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금원을 지급한다.

사례 35 2019서울조정573·574 정정·손배청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귀어한 지역주민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A씨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힘을 등지고 약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귀어 이후 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주민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일조했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사법절차를 진행한 것인데도 신청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일부 주민들만을 인터뷰하여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씨가 마을 주민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수적 논리로 A씨를 괴롭혔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복수의 마을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고 신청인이 연루된 형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기에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사법기관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밝히지 않으면서 고소·고발건수를 부풀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정·반론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3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전략] 마을 이래야 고작 주민 10여 가구가 사는 조그만 섬마을. 이웃주민 누구네가 손가락이 몇 개이고 농사 규모가 얼마인지까지 세세히 알 수 있는 경치 좋은 조용한 마을에서 험악한 인심을 목격했다. 얘기의 발단은 몇 년 전 귀어 차 이 마을에 이사 온 A씨로부터 비롯됐다. 마을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A씨가 이사 온 뒤로부터 마을 주민들은 A씨와 사소한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면 사법기관에 잦은 고발을 당해 하루 한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다.[중략]

주민들의 말만 듣기에는 무언가 영 개운찮은 느낌이 들어 실제 마을 주민들을 고발한 당사자인 A씨에게 자세한 사연을 물어본 결과 대답이 가관이었다. A씨의 답변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조그만 섬 동네에서 법리를 모르는 순진한 이웃에 대한 A씨의 행패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이 가지지 않았다.[후략]

보도 2

[전략] 마을 주민들이 농성 아닌 항의성 집회를 가진 것은 같은 마을 주민 A씨의 잇단 고소 고발 횡포 때문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사건만 해도 70~80여 건. 이날 모인 마을 주민들의 표정은 항의성 집회라기보다는 힘없는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피맺힌 절규였다.[중략]

그렇다면 이들 주민들이 그토록 해를 끼친다는 A씨는 과연 누구인가. 군청을 찾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한 언론 매체에 근무하는 기자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주민들이 땅이나 어장 관련 이해관계가로 조금만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와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중략]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위세를 떨친다는 말이다. 법이라는 권력과 관의 힘을 등지고 약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A씨의 행위가 과연 지역의 선량한 관습과 법에 앞서 과연 타당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 1, 2에서 B지역 주민 A씨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만 해도 70~80여건이며, A씨가 권력과 관의 힘을 등지고 약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고소·고발 건수는 10여건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한

고소·고발은 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 또는 주민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수첩 섹션에 통상의 방식대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각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6 2019서울조정626·627/628·629 각 정정·손배청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것은 대표팀 주치의가 흉부외과 전문의라 전문성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A선수의 발가락 근육 손상을 발가락 뼈 부상으로 오진하고 B선수의 큰 부상을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했으며 C선수의 부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서울의 한 병원 의사에게 의무기록을 반출해 진단을 의뢰했다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두 개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이 A선수와 B선수의 부상에 대해 진단을 내린 사실이 없는데 오진했다고 보도하고 C선수가 두바이에서 아시안컵 연습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대표팀 의무팀장이 당시 한국에 있던 신청인에게 영상기록을 보내 판독을 의뢰한 사실을 신청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서울의 지인에게 진단을 의뢰했다고 허위보도가 게재됐다. 이와 함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도 위 기사가 게시돼 의료인으로서 명예가 실추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대표팀 주치의는 A선수의 부상에 대해 발가락 뼈에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내린 적 없고, 인대손상에 따른 치료 중 MRI 촬영을 진행해 근육 파열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B선수가 부상당했을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 골절이 발견되지 않아 경과에 따라 CT촬영을 진행해 골절 진단을 했다.
- C선수는 연습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주치의가 다른 의사에게 의무기록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대표팀 의무팀장이 두바이 내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당시 한국에 있던 주치의(신청인)에게 보내 판독을 의뢰한 것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또는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자를 통한 진단기록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판단,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이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중략]

특히 A선수는 필리핀과의 첫 경기에서 다친 발가락 뼈가 아닌 발가락 근육 손상이 15일 추가로 발견돼 최소 1주일을 더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중략]

선수들의 잦은 부상을 그저 불운이라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원인의 하나로 대표팀 주치의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치의가 선수의 부상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호주 아시안컵에서 B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단순 타박상이라고 오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치의의 전공이 축구와 큰 관련이 없는 흉부외과 전공이라 생긴 한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아시안컵에선 이미 귀국한 C선수의 부상을 꿰뚫어보지 못했다. 당초 C선수의 부상을 우려해 예비 선수로 D를 동행시켰지만, 포지션이 다른 D의 부상으로 E선수를 긴급 호출해야 했다. C선수의 귀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무 기록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서울 한 병원의 의사에게 반출해 진단을 의뢰한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인한 것이었다.

협회 내부에서도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은 C선수의 전 소속팀이 최근 선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팀 한 관계자는 “C에게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 ‘서울에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래서 협회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놀랐다.”고 귀띔했다. 결국, 협회는 C선수 사태 이후 선수들의 몸 상태를 주치의가 협회 내부와 공유하도록 지시했다.[후략]

※ 두 개의 매체가 유사한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해 한 개의 조정대상기사만을 수록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자 축구대표팀 주치의가 올해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당시 A선수의 발가락 근육 손상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고, C선수의 의무 기록을 서울의



한 의사에게 반출해 진단을 의뢰했으며,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도 B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단순 타박상으로 오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치의는 A와 B선수의 부상에 대한 오진을 한 사실이 없고, C선수의 의무기록 반출도 당시 대표팀 의무팀장이 한국에 있던 해당 주치의에게 영상을 보내 판독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체 1>과 <매체 2>의 인터넷 홈페이지 스포츠>축구 섹션에 통상의 방식대로 위 보도문(조정대상기사에 사용된 사진을 보도문 상단에 삽입함)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7 2019전북조정31·32, 2019전북조정33·34, 2019전북조정35·36, 2019전북조정38·39 각 정정·손배청구

특정 지자체를 상대로 짧은 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비판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한 위법성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A군이 군수의 측근들로 구성된 불법단체에게 청사 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고, 수백 억 원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 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협정서를 근거로 특정 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한 데 ‘커넥션’ 의혹이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목적에 벗어난 초호화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 행정을 처리해오고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군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2019전북조정31·32]

- 청사 내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합법단체이며,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다.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을 넘지 않아 도나 중앙부처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대부분 전임 군수가 위촉한 인사들인데다 지역 내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활동사진을 담은 사업실적보고서가 있다.

[2019전북조정33·34]

해당 농공단지 분양은 2010년도 체결된 협정서에 따른 것이고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없어 관련법에 따라 원가 이하로 분양한 것이다.

[2019전북조정35·36]

- 대책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구성돼 A군과 연관성이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A군과 D시는 해당 사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전북조정38·39]

- 해당 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011년 상급부처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 교부 결정된 사업이다.
- 고가의 대리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콘크리트 벽체 외부 마감재를 사용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진실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취재 당시 A군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기사에 반영했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도했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특정 지자체를 상대로 허위사실이 담긴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사건별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총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 조정대상보도

[2019전북조정31·32]

A군이 불법단체에 청사 지하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알 수 없는 단체가 군 청사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다.”며 “대부분 군수 측근이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 대부분은 이 단체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A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3년 창립된 단체로 ‘A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가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에 부합되는 단체인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후략]

[2019전북조정33·34]

보도 1

A군이 B농공단지를 337억을 들여 조성한 후, 지난 2월 15일 80억 원을 받고 C사에 매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농공단지는 A군 일대 10만 2천평 규모를 국비 70억, 도비 5억, 군비 262억을 들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한 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2월 15일 C사에 80억으로 일괄매각했다.[중략]

조성비용은 평당 33만 원인 반면 매각 금액은 평당 9만 원이다. 현재, A군 주변의 시세는 수십만원을 호가한다는 평가를 더하면 매각에 따른 커넥션이 있다는 여론이다.

보도 2

“계약서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입니다.” 계약서를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군청 담당의 답변이다.

군은 ‘B농공단지’를 3백3십7억을 들여 102,406평을 조성한 후, 2월 17일 C사에 조성원가 대비 25%인 80억에 매각해 불법 특혜논란이 있다.[중략]

앞서, 337억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를 25%에도 못미치는 80억에 분양한 것은 불법적인 특혜라는 질문에 담당은 C사와의 투자협약을 들었다. 하지만 협약은 2014년 6월 시효가 종결된 상태다.[중략]

군이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A군수가 정정당당 하다면 취재에 적극 응해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정기관은 군수의 재량권 남용과 예산남용 등 관계법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9전북조정35·36]

A군 오염토양정화시설과 관련 D시의 행정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A군이 반발하면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D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A군이 강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책위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D시가 지난해 오염토양 정화업 설치변경 신청을 최종 수리하자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군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송에 이르고 있는데 ‘D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A대책위’가 1월부터 이 업체 감시를 위해 감시초소를 운영, 오염토양 반·출입과 차량운행을 감시해오던 중, 지난달 감시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중략]

군이 D시가 적용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가 주장한 대법 판례도 외면한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폐기물법을 적용, D시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책위를 구성케 하여 규탄대회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급기야 업체 감시에 나선 대책위 소속 주민이 사망했지만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후략]

[2019전북조정38 · 39]

보도 1

A군이 2015년부터 추진한 ‘A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재해 예방이 아닌 ‘초호화 하천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20억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으로 A교에서 E교 1.2KM구간과 인도설치사업 70억을 편성, 군수가 당선된 해인 2015년 12월 발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군청앞 700M구간은 석축외 공사를 하지 않았고, 터미널에서 A교 구간 500M의 공사비가 1M에 2,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조성”이라고 했다. 또 “주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하천 재방의 단면을 자르고 옹벽을 설치하고 대리석을 시공했다.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천의 단면에는 발파석을 이용 석축을 쌓았다. 한마디로 친환경 하고는 거리가 멀고, 재해예방과도 배치된다.

보도 2

A군이 2015년부터 균형발전특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재해예방이 아닌 초호화 하천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현장의 하천 단면은 30m, A천의 상류에 속한다. 이곳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반면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친환경하천조성사업을 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군은 재해예방을 한다며 1m에 2,000만 원 상당의 혈세를 500여m에 사용했다.[중략]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중앙 정부의 잘못인지, 지사의 잘못인지, 군수의 잘못인지, 군 의회의 직무유기인지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군수와 군 의원들은 정당하다면 답변을 해야 한다. 회피 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2019전북조정31·32]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군이 ‘A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라는 불법단체에 청사 지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예산까지 지원한다.”, “대부분 군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실 사용료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원은 대부분 전임 군수 시절 위촉된 사람들이 재위촉된 위원들이며 대부분 A지역 내 인사들이므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결과보고서에 사진 한 장 없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지원법상 등록의무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전북조정33·34]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 1, 2에서 “A군이 B농공단지를 337억 원에 조성한 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80억 원에 매각해 특혜 및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A군은 대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10년 C사, A군, 도 3자 간 협정서를 체결하고 협정내용대로 부지 조성 후 C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군은 “협정서 상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농공단지에 중견기업 입주도 가능하고 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반 시설은 입주 회사가 부담하므로 A군에서 추가 지출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전북조정35·36]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군이 토양오염정화시설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D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을 동원한 과잉 대응으로 주민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주민들에게 대책위를 구성하게 하거나 대책위 활동에 주민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군은 “환경부 예규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오염토양 ‘반입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의 입지에 준해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예규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토양정화시설을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군은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토양정화업 시설 설치 예정지가 아닌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한 환경부 예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전북조정38·39]

본보는 조정대상기사 1, 2에서 “A군이 하천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사용하여 재해 예방이 아닌 초호화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1년 국토해양부와 도로부처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 교부 결정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서 공사 방법은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군은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 구간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하폭이 좁아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옹벽으로 시공한 것이고 고가의 대리석이 아닌 화강석 판석으로 마감한 것이며, 하수관을 정비하여 악취 때문에 산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다른 기사 게재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80일 이상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은 섹션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가 계속 열람·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위 항과 같게 한다.
-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조정대상 기사를 게시하거나 전제한 경우, 조정대상 기사가 계속 열람·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이 바로 아래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위 항과 같게 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8 2019서울조정966·967 정정·손배청구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병원 간판을 노출한 데 대해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가슴필러 시술 부작용 논란을 보도하면서 4개의 성형외과 병원 간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4분할 형태의 화면으로 8초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4개 성형외과 중 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가슴필러 부작용 사례와 전혀 무관한데도 위 보도에서 병원 간판 중 한글 상호는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중국어 상호가 그대로 노출돼, 가슴 필러 부작용을 일으킨 병원으로 인식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위 보도의 A성형외과는 가슴 필러 부작용을 일으킨 성형외과가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의 중국어 상호가 노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가슴 필러 시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고, 의료학회의 향후 대응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신청인 병원 간판을 사용해 신청인 병원이 부작용을 일으킨 병원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시보기 영상 중 문제 장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가슴필러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가슴에 주입한 필러가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고 가슴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증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중략]

여전히 가슴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중략]

[신청인 병원 영상] 최근 가슴필러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자 의료학회에서는 대응팀을 꾸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는데요.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조정대상보도 영상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상호가 등장하는 장면(25분경)을 삭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를 위 항에 따라 수정한다. 또한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위 항에 따라 수정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9 2019대구조정32 손배청구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위해 제공한 사진을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에 동의 없이 재사용한 데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복지재단이 각종 비리로 자성을 다짐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지난해 재단 산하기관 직원들이 사내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A재단 산하기관 직원들로, 위 보도에 실린 사진은 개선을 다짐하는 행사에서 찍은 단체사진으로 당시 A재단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나, 재단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에 해당 사진이 동의 없이 재사용됐고, 더욱이 담당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로 항의하자 부정적인 후속기사까지 보도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 목적으로 A재단으로부터 해당 사진을 제공받아 공표한 적이 있고 재사용 금지에 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재사용에 관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고, 상징적인 수준의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과 함께 신문지면에 사과문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내 사진 삭제 등을 포함한 중재부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재단 사태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여론이 크게 나빠져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재단 산하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학대 및 은폐 사건이 지역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B시와 북구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중략]

A재단은 2018년 임금 갈취 등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들이 B시와 북구의 엄중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B시와 북구는 감사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자 징계와 고발조치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내부자 고발로 관행적인 폭행사실이 알려진 탓에 재단 측은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A재단은 10여 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왔으나 그동안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재단 측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보도방법

- 신문 1면에 조정대상기사에 사진 속 인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단체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박스 형태로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인들 관련 기사내용 및 사진이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로금으로 함께 3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0 2019서울조정1108·1109 반론·손배청구

공직자의 정당한 휴가를 '기강 해이' 사례로 보도한 데 대해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해외 공관에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A공관 관계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휴가를 떠나면서 공직자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A공관 관계자인 신청인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수주 전에 휴가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한국 내 공무상 일정과 집안 행사에 따라 사전 결재를 받은 것이었고 곧바로 임지에 복귀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완수했음에도, 상급자의 폭언에 항의하기 위해 1년 전에 발송한 메시지를 마치 이번 휴가를 떠나면서 남긴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론보도 및 3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조정성립에 따른 반론보도문도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의 휴가 경위에 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조정대상보도와 반론보도 모두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 조정성립에 따른 반론보도문은 48시간 게시 이후 조정대상보도와 함께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1 2019서울조정2006·2007 정정·손배청구

사기 사건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사진을 신청인의 항의로 교체했다라도 노출 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사기 사건을 전하면서, 중국 동포가 비자 연장 신청이 계속 지연돼 여행사 앞에서 담배를 피며 담당 행정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캡션이 달린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비자 사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도 여행사 간판이 노출됐고, 사진 속 중국 동포라고 보도된 남성은 신청인 여행사의 옆 가게 주인으로 평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자주 피는데 중국 동포라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신청인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 영업 손실도 크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위 보도의 사진에 등장하는 여행사는 비자 사기 사건과 관계없는 업체이고,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중국 동포가 아니라 대림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신청인의 항의를 받아 사진을 교체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사진이 교체됐다면 정정보도의 실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10일 이상 문제의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사진캡션] 서울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담배를 피고 있는 중국 동포. 그는 비자 연장 신청이 계속 지연되자 담당 행정사를 얼굴이라도 보려고 수시로 이곳에 와 기다린다.[중략]

30일 서울 대림동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따르면 최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비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곤경에 처한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접근, 돈을 뜯어 가는 것이다. 비자 연장 업무 등은 비교적 간단한 일에 속하지만, 외국인 체류자들에게겐 쉽지 않다. 한국어가 서툴고 정보가 부족해서다. 일부 비양심 행정사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다.[중략]

이러다 보니 행정사 ‘사칭’ 사기도 일어난다.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영등포구나 구로구 일대에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만 받고 잠적한다.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 왕모(36) 씨는 최근 사칭 업소에 잘못 걸려들었다가 돈만 날렸다.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왕씨는 “혹시 경찰에 추방당할까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2 2019대전조정85 손배청구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지역 주택조합장이 취임하자마자 남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했으며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조합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 ‘부부사기단’ 등으로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이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양 당사자 간 의견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A시 B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대한 비아냥으로 얼핏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가족사기단을 떠올리게 한다.

애초 조합은 “청약통장 필요 없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이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특히 일반분양분 공급가액을 높여 수요자들의 시세차익을 실현한다.”며 분양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한 것을 비롯해 시로부터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는 등 조합장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전체 조합원 362명 가운데 27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비롯 이사 3명, 감사 1명 등의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그런데 C조합장이 취임 다음 달부터 남편에 월 1,500만 원씩 지불하는 용역계약을 작성해 '부부간셀프용역'이란 부적정 용역계약의 중심인물로 제기됐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3 2019제주조정12·13/14·15 각 정정·손배청구

사적 분쟁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일방의 입장만을 듣고 편파 보도한 데 대해 기사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할 것을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세입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생활오수를 10년 간 무단으로 방류한 현장을 건물 소유자가 발견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시청이 세입자에게 배수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2개의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과 임대차 관련 분쟁 중인 건물주만을 인터뷰해 카페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생활오수가 무단 방류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시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개선명령 공문이 세입자에게 발송됐으나 정정 공문이 건물주에게 다시 발송됐음에도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보도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의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세입자는 건물 내 오·폐수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단 방류를 위한 시공을 한 사실이 없다.
- 건물 시설에 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건물주만을 취재해 보도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시청 공무원을 취재할 당시 공문이 정정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사적 분쟁에 관한 사안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했다고 판단, 조정대상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청구액 2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건물주와 시청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을 근거로 “A시 B동에 소재한 카페가 생활오수를 10년간 무단방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A시가 카페 운영자인 세입자에게 배수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건물 내 생활오수 방류에 관한 A시의 개선명령은 세입자인 카페 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문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 제목 및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48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및 노출을 차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4 2019충북조정44·45 정정·손배청구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기사 오류를 인정, 열람·검색 차단 및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군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업무를 방치해 순대제조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 군의회에 병원 매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관광객을 돈으로 유치한다는 의혹 등에 관해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A군은 관내에 HACCP를 적용받는 순대 제조·가공업자는 없고 관련 업무 소관부처는 군이 아닌 식약처이고, 군의회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관광객 유치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기사로 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정정보도 및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순대 제조는 2017년부터 HACCP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없는데 A군이 행정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A군이 B병원 매입을 위해 부지매입비 12억여 원을 군의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A군이 돈으로 관광객을 사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A군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A군관광협회의 4인은 모두 외부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또는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신청인은 정정보도보다 기사 열람·검색 차단을 원하며 상징적인 수준이라도 손해배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조정대상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및 40만 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들 및 관련 블로그 게시물들을 전부 열람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만 원을 지급한다.

제 5 장

기사수정 / 열람 · 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사례 45 2019강원조정9·10 정정·손배청구

원 보도에 신청인 측 입장을 추가하고 보도에 연동된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노총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사실을 보도하면서 C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무임금으로 근무하게 했으며 공익제보하는 교사를 부당해고 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자회견 상황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함께 제공했다.

■ 신청취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은 해당 교사의 해고는 원장에 의한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여러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고, 위 보도에 언급된 급식 비리 등은 신청인 어린이집과 무관한 사례인데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모든 비리가 신청인 어린이집 사례인 것처럼 보도돼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인터뷰한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부족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등에 절차대로 징계해고된 것으로, 원장의 갑질로 인한 해고가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어린이집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청인은 유튜브 영상에서 기자회견 중인 보육교사의 얼굴이 노출돼 문제의 어린이집이 신청인 어린이집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양 당사자는 기사 말미에 신청인의 입장에 관한 문장을 삽입하고, 조정대상 기사에 연동된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는 것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A노총 보육지부 B지회는 C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C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은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차별했다.[중략]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정보가 없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보게 되고, 결국 공익제보하는 보육교사만 해고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이들은 “C시는 출산보육과 공무원을 징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해야 한다.”며 “C시의회는 공익신고 보호 조례와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가 문장]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부당한 계약 요구와 해고 등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에 연동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여 기사 내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대상보도 중 가장 하단에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부당한 계약 요구와 해고 등은 없었다고 알려졌다’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사이트)에도 수정된 조정대상보도를 송고한다.

사례 46 2019서울조정1526 정정청구

유명 가수의 부친에 관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유명 가수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 데 대해 제목과 본문에서 실명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아들 A를 인기가수로 키운 가수이자 제작자인 B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 외에 피해자의 '미투'로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면서 A와 B의 실명을 보도했다.

■ 신청취지

보도된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할 당시부터 주장한 내용으로 새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도 '미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장만을 근거로 혐의사실이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고, B의 혐의와 무관한 A가 함께 언급된 것은 부당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고, 항고사건 조사 시 C지검에서 B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신청인 B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A의 실명을 제목 및 본문에서 삭제하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가수이자 아들 A를 인기가수로 키운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B를 조사해 온 C지검은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B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D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B의 주거지와 가까운 관할인 점을 고려해 D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추후 기소 또한 D지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C지검 측은 그동안 B가 받아온 혐의 외에 힘 있는 가요제작자였던 B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발인이 전 세계로 퍼진 ‘미투’라는 대대적 캠페인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 혐의는 당연한 판단으로 보인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가수이자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 섹션에 통상의 방식대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기사수정사항

1) 제목

- 기존: [단독] ‘A父’ B, 강간 등 혐의로 C지검 → D지검 이송
- 수정: [단독] B, 강간 등 혐의로 C지검 → D지검 이송

2) 본문 중

- 기존: 가수이자 아들 A를 인기가수로 키운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 수정: 가수이자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사례 47 2019서울조정1552 손배청구

방송 사실을 숨기고 영상을 촬영 및 방송한 데 대해 다시보기 영상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 부부의 버스킹 공연을 방송하면서 관객으로 참여한 신청인들이 가수 부부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공연 장소를 우연히 지나다가 관객으로 참여했을 뿐인데, 방송되지 않을 거라는 제작진의 안내와 달리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동의 없이 방송되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이 사건 신청 직후 조정대상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영상은 열람·검색이 차단됐고, 심리가 열리기 전 당사자 간 화해에 이르러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8 2019서울조정1585 정정청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있었던 논쟁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A항공 직원들이 공석이 된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했고 이를 두고 직원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A항공 사내 게시판 캡처 화면을 함께 보도했다.

■ 신청취지

A항공 노동조합인 신청인은 2019년 여름 일본행 제드(ZED, 항공사 직원 할인 항공권) 리스팅 숫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도 부정확한 제보만으로 허위사실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2019년 여름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는 2018년도 대비 오히려 23%정도 감소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일본행 제드 항공권을 둘러싸고 사내 게시판에서 직원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홍보팀을 취재한 후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 근거로 제시한 제드 리스팅 수치는 조정대상기사 보도 이후 예약 취소분까지 포함된 것이라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수치에 관한 신청인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제목 중 일부 표현과 본문 중 사내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에 관한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후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A항공 직원들이 공석이 된 일본행 비행기 티켓 수백 장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하며 '호재'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A항공 한 내부직원은 “항공사 직원이면 비행기 공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앞세워 일본행 티켓을 구매한 직원이 급증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이번 반일운동을 ‘가족여행 싸게 갈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A항공의 익명 게시판에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자성을 촉구하는 글과 ‘사내 복지와 애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중략]

A항공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에는 이 같은 상황을 고발하는 글이 게시됐다. B씨는 “8월 14일까지 인천 출발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가 550명이나 된다.”며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는 직원, 가족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랍다.”라고 적었다. 이어 “예전 같으면 여름 성수기때 감히 리스팅조차 못 할 시기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기는 좀 그렇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제드(ZED·Zonal Employee Discount) 티켓이란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성 할인 항공권이다. 항공사는 비행기 출발 시점까지 아직 팔리지 않은 잔여석에 한해, 최대 90% 가까이 할인한 가격으로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준다. 직원의 부모 및 형제, 자매 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직원이 할인으로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A항공 직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항공 노동조합 측은 “2019년 7월 ~ 8월 기준으로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사례 49 2019서울조정1947/1948 각 정정청구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신원을 특정해 '사기 사건 가담자'로 단정보도한 데 대해 기사 본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보험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이 브로커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전하면서 현직 경찰과 보험사, 브로커가 유착 관계를 맺고 수사 대상인 병원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의 '현직 경찰'로서,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현 근무지와 직함 등을 공개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돼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보도의 '현직 경찰'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보도의 '브로커'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상대가 '브로커'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보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브로커와 병원장 간 대화녹음파일을 분석해 보도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한 '경찰'이 모두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독자들이 기사에 언급된 '경찰'이 모두 신청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표현을 수정하는 조정안을 권고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이 병원은 A지역 B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난생 처음 겪는 경찰 수사에 병원장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경찰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운동치료를 물리치료 시간에 포함시켜 병원 측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수령 해왔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보험사 16곳이 문제 삼은 금액은 모두 18억여 원. 병원 측은 그러나 운동치료는 물리치료 이후에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병원장들은 불안해했다.

병원장들을 돕겠다고 등장한 두 사람은 그런 심리를 파고들었다. 브로커는 병원장을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과 보험회사, 브로커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을 다수 말했다.[중략]

병원장들이 그래도 미심쩍어하자 C씨는 보험사기 전담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현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 E씨 이름을 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E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여줬다. E씨가 전한 내용은 '변호사들은 큰 도움이 안 되니,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의 명함도 보여주면서 보험사와 합의를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병원장들을 계속 압박했다.[중략]

내 뒤에는 십 수 년 관리해왔던 '인프라'가 있는데 100여명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관리한다.” 한 마디로 평소 관리해왔던 '인프라'를 통해서 보험사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에게 관리비용 명목으로 용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빼먹지 않았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수정 전

'병원장들이 그래도 미심쩍어하자 C씨는 보험사기 전담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현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 W의 이름을 댔다.'

'W씨'

'(D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W씨가'

'W씨는 “평소 알던 C씨가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

수정 후

'병원장들이 그래도 미심쩍어하자 C씨는 현직 경찰 E씨 이름을 댔다.'

'E씨'

'현직 경찰이'

'그 현직 경찰은 “평소 알던 C씨가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사례 50 2019부산조정56 추후청구

신청인의 성씨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했더라도 보도된 신청인의 혐의사실과 무죄판결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의사인 신청인이 펜션형 요양시설과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요양시설에 유치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에 언급된 혐의에 관해 고등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며 추후보도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위 보도에 신청인의 성씨가 실제와 다르게 보도됐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라 사건발생 시기 및 장소, 혐의내용과 판결내용이 일치한 점 등을 인정해 피신청인은 조정 대상기사에 대한 열람 및 검색을 차단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51 2019강원조정78·79 정정·손배청구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제목과 본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기관장이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청사에 도착하자 상황실로 몸을 피하고,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도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2개의 사진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기관은 실종자 가족들의 방문에 수색 책임자가 수색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가족들이 갑자기 기관장을 방문하겠다고 이동했으나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기관장이 상황 지휘를 위해 위기관리실로 이동하는 바람에 마주치지 못했던 것인데도 기관장이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피한 것처럼 보도돼 기관과 기관장 모두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기사 제목과 본문 중 사실관계가 다른 표현을 수정하는 것과 함께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실종자 가족들의 청사 방문 당시 기관장은 위기관리실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상황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고의로 실종자 가족의 면담요청을 피한 것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신청인 측 해명에 따라 기사 말미에 신청인 측 입장을 추가했고, 기관장이 위기관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기관장과의 면담이 불발돼 항의하는 모습을 피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한 것을 두고 ‘몸을 피했다.’, ‘공무니를 뺐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소지가 크다고 판단, 기사 제목과 본문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유가족 4명은 A기관장을 만나 현재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또 내일부터 독도 해상에 발령될 풍랑특보를 우려해 실종자 수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 C시 도착 3시간 30분 전부터 C시로 가 A기관장을 만나겠다고 소방과 해경 관계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해경 직원이 위기관리실로 들어가는 사진 삽입] 유족들이 5층 기관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A기관장은 기관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와 4층 위기관리회의실로 몸을 피했다. 유족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4층을 지날 때 A기관장은 4층 위기관리실로 꿈무니를 뺐다. 그 광경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B기관 공무원들은 유족들을 5층 소회의실로 안내했다. A기관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수정 전

[제목]

‘A기관장 면담 요구에 ‘꿈무니’… 실종자 유족들 분통’

[본문]

‘유족들이 5층 기관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A기관장은 기관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와 4층 위기관리회의실로 몸을 피했다.’

‘유족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4층을 지날 때 A기관장은 4층 위기관리실로 꿈무니를 뺐다. 그 광경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본문에 삽입된 사진과 캡션

수정 후

[제목]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유족들 분통’

[본문]

‘유족들이 5층 기관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A기관장은 기관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와 4층 위기관리회의실로 갔다.’

삭제

각 삭제

사례 52 2019경남조정93 반론청구

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를 엠바고를 파기한 보도라고 표현한 데 대해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한 언론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검거 소식을 보도한 것에 대해 엠바고(embargo)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언론사는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사 중 최초로 해당 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전했을 뿐 경찰이 엠바고를 요청한 사안이 아닌데도,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신청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신청인 언론사는 엠바고를 파기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엠바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경찰의 공식 확인이 있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엠바고를 어긴 사실이 없다는 경찰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 및 검색을 차단했고, 신청인이 해당 조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조정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제 6 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53 2019서울조정54 정정청구

경쟁 업체의 허위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원 기사는 물론, 기자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기사에 대해서도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무자격 관광가이드의 인솔 하에 박물관을 관람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 현지 여행사의 상호와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업체는 박물관 규정에 따라 사전예약을 거쳐 공인가이드와 함께 투어하고 있고 박물관에서 쫓겨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제보자의 허위신고에 따라 벌어진 소동에 관한 동영상을 마치 관람객들이 실제 쫓겨난 것처럼 편집 사용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비롯해 소속 기자 개인 블로그에 전재한 기사까지 열람 및 검색 차단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54 2019서울조정1678 정정청구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공식 석상에서 B언론사 기자가 정부부처 사무관에게 폭언을 하고 물의를 빚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무관과 기자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기자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해당 사건은 사무관과 기자 간 직접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기자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마치 사무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신청인 부처와 해당 사무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A부처 명의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해당 사건은 C사무관과 B언론사 기자 간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언론사 기자의 일방적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 A부처와 기자단 간 공식 회견 장소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C사무관 및 A부처는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부처 소속 C사무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신청인 부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 부처가 법령상의 과제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 부처를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A부처 기자단이 출입처 공무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B언론사 기자 징계를 위해 오는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A부처 간사단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대변인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개

기자가 C사무관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물의를 빚었다.”며 출입 기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다루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기자단 명예 실추 등이 사유다.[중략]

사건 발단은 다음과 같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A부처 공무원과 기자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A부처 소속 C사무관에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지나치게 소란스럽고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욕설을 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이어질수록 기자와 사무관은 뜻이 맞지 않았고 기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기자가 C씨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

해당 기자가 이 상황을 말리는 A부처 기자단 간사에게도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목격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는 목격자는 “그 기자가 돌연 고성을 썩 질렀다. 나가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 모두 당황해 몇 초간 멍했다.”고 설명했다.[후략]



사례 55 2019서울조정1704, 2019서울조정1705, 2019서울조정1706, 2019서울조정1707, 2019서울조정1708(병합) 각 추후청구

과거 제품회수 명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품회수 행정명령 취소 판결에 따른 추후 보도를 청구했으나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인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사안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5개 언론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현미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제품명과 제조회사 명칭을 각 공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업체는 법원 재판 결과 위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정돼 행정 명령이 취소됐으므로 취소 처분에 관한 사실이 보도돼야 한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법원 재판결과, B사는 위 내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청구권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인 업체는 행정처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형사절차상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요건을 미비한 청구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결정서를 통해, 형사절차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기속력 있는 판결 등으로 과거 보도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새로운 보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입법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조정대상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미유 제품과 빵류 제품 1곳에서 각각 벤조피렌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A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업체가 제조·판매한 'C현미유'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2.0 $\mu\text{g}/\text{kg}$ 이하) 초과 검출(2.5 $\mu\text{g}/\text{kg}$) 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후략]



사례 56 2019경기조정183·184·185 정정·반론·손배청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명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언론사 계정의 유튜브 및 SNS에서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향후 발견되는 기사 복제글에 대해서도 삭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세 명의 중학생이 상급생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인근 산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재학 중인 학교명과 해당 학생들의 이니셜을 보도했다.

■ 신청취지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인 신청인은 자녀가 ‘피해’ 초등학생의 상습적인 놀림에 괴로워하다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했을 뿐 실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해 보도한 내용이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산이 아니라 인근 식당 근처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 그동안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반말과 놀림을 당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문자 메시지로 하급생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고, 보도 이후 가해 학생 측 부모의 항의로 학생들을 익명처리 했으며, 가해 학생들 측의 반론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부모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소년법상 조사·심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실을 수 없게 한 취지를 고려해 피신청인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뿐 아니라 피신청인 계정의 유튜브 및 SNS에 전재된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신청인이 향후 위 기사의 복제물을 발견할 경우 피신청인이 삭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 피신청인 계정의 유튜브, SNS에 전재된 조정대상기사가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복제물을 발견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즉시 URL을 전송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복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례 57 2019전북조정47·48/49·50 각 정정·손배청구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직자를 비판한 사설에 대해 과도한 의견표명임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공인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 간 화해를 권유, 심리 중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사설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A교육감이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법자가 됐고, 전과자로서 지역 교육계를 이끌어갈 신뢰를 상실했다고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지역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신청인의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외국대학에 입학한 신청인의 자녀를 마치 편법을 사용해 진학한 것처럼 보도하는 등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설 대부분의 내용이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 신청인이 소송을 남발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청인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다.
- 사실 확인 없이 '전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지역 국회의원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교적 표현의 자유가 넓게 허용되는 사설 형식을 통해 공직자의 행보를 비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지위 상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전과자', '범법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의견표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인이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공인임을 고려할 때 비판을 감당할 범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보도문을 게재하는 대신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했고, 심리 중 화해에 이르러 조정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지도자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역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A교육감은 전과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계 원로가 나서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징계를 받는 등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할 교육감은 법률위반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B국회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A교육감은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A교육감은 C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거부되는 수모도 겪었다. 앞서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권남용죄로 700만 원 벌금형도 받았다.

B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 8,000여만 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모두 국민혈세라고 한다. C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막상 A교육감의 아들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의 D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는 현역 의원의 비판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항변해보라.



사례 58 2019서울조정1929 · 1930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실 보도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향후 활동에 관한 PR보도를 게재하고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교향악단이 2주 간 무단결근한 B 부지휘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했고, 부지휘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교향악단 측의 입장에 관한 보도에 이어, 교향악단의 직권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부지휘자의 입장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 신청취지

교향악단 측의 의견만을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보도 이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며 반론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A교향악단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지난 6월 직권면직 한 B 전 부지휘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
- B 전 부지휘자는 A교향악단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신청인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신청취지에 같음해 하반기에 예정된 국외활동 소식을 보도해주길 원한다고 밝힌 데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한 PR보도를 게재해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A교향악단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B 부지휘자를 직권면직했다.

A교향악단은 본지와 의 통화에서 B 부지휘자를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A교향악단 관계자는 “B 부지휘자가 연주회를 포함해 2주가량 무단결근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려 했지만 인사위원회에도 불참했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B 부지휘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증거부터 가져오라는 말에 환멸을 느낀다.”며 인사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후략]

보도 2

지난 달 A교향악단에서 직권면직된 B 전 부지휘자가 “부당한 조치”라며 부당하고 구제 신청과 관계자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B 전 부지휘자는 A교향악단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어겼다고 31일 주장했다.

그는 “6월 7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즉시 소명 자료를 보냈지만 6월 12일 당사자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됐고, 6월 14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A교향악단이 직권면직 사유로 든 무단결근에 대해 “결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적은 메시지를 사무국 경영관리팀장과 단원 1인에게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 근거로 그는 이들에게 보낸 문자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하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받았다.”면서 “권고사직과 직권면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후략]



사례 59 2019서울조정2092 · 2093 정정 · 손해청구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된 기고문을 동의 없이 게재한 데 대해 원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단체와의 공동 기획으로 ‘대학 교육’에 관한 기고문을 4차례 연재했고, 그 중 신청인의 기고문을 3회 차 연재물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게재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기고문을 게재하기 전 피신청인과 수차례 수정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최종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기고문을 게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수정해 본래 취지가 훼손된 기고문을 동의 없이 게재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 기고문으로 정정하여 게재하는 것과 함께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 기고문으로 정정하여 게재하는 것에 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이른바 ‘조국 대전’에 던져진 적폐 척결 과제 중에는 교육 개혁의 과제도 있다. 조국 딸이 연관된 입시 비리 의혹은 많은 흡수저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한 바 있다. A부처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 진상 조사를 언급했지만 교육 대물림이 해소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시 절차를 바꾼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까닭은 대학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중략]

상식적인 대안은 연구 중심의 대학원 대학, 교육중심의 학부대학, 직업 교육 중심의 대학 세 갈래로 나누어 발전시키는 것밖에 없다. 지금처럼 명문대라도 학부생 장사만 하고, 대학원은 대학마다 설치돼 있고, 4년제 대학들이 앞다퉀 전문대학의 기능학과들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대학들이 장사에만 열을 올려서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변하기 어렵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여느 때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과 언론, 수구 정치 세력의 연합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흔들려야 한다. 이른바 '조국 대전'에 던져진 적폐 척결 과제 중에는 교육 개혁의 과제도 있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수많은 가짜뉴스는 많은 흡수저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한 바 있다.[중략]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은 연구 중심의 대학원 대학, 교육 중심의 학부 대학, 직업 교육 중심의 대학 세 갈래로 대학을 나누어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명문대라도 학부생 장사만 하고, 대학원은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고, 4년제 대학이 앞다투어 전문대학의 기능학과들을 벤치마킹하는 식이라면 학벌사회에서 일부 대학은 언제나 승자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본보 2019년 10월 10일자 11면에 실린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60 2019서울조정2160 손배청구

은퇴한 운동선수는 더 이상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에서 성명과 사진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전직 격투기 선수인 A가 후배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A의 성명과 나이 및 사진을 공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격투기 선수에서 은퇴해 더 이상 공인이 아닌데도 신청인의 성명 및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고, 화급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신청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진 및 실명을 비롯한 위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은퇴했다라도 선수 활동 당시 뛰어난 성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실명으로 보도된 바 있어 공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유명 선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중재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실명을 익명처리하고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종합격투기 대회 UFC에도 출전했던 전직 유명 격투기 선수가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 A씨(○살)를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후배 선수인 ○살 B씨를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7년 UFC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정성립 사항

1) 제목

- 기존: UFC 출신 A, 후배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
- 수정: 전 UFC 선수, 후배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

2) 본문 중

“A 씨(○살)”을 “A씨”로, “○살 B 모 씨”를 “B씨”로 수정한다.

3) 자료사진

신청인의 초상을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리게(또는 모자이크) 처리한다.



부 록

부록.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정

(1981. 3. 31. ~ 2019.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1981	44	9			12 (5)	1	2	2	18	39.0	
1982	50	19			19 (5)		2	4	6	58.3	
1983	71	21			22 (7)	1	1	8	18	52.2	
1984	54	12			29 (8)	3		5	5	49.0	
1985	59	12			28 (5)	4		7	8	43.6	
1986	49	14			10 (2)	1		11	13	56.3	
1987	47	10			9 (4)	1		2	25	34.8	
1988	55	16			12 (5)		1	13	13	63.0	
1989	121	29			35 (10)		6	21	30	52.2	
1990	159	42			43 (10)	1	2	40	31	59.0	
1991	220	52			48 (9)	3	1	43	73	48.1	
1992	381	81			79 (12)	19		107	95	55.2	
1993	423	132			96 (16)	8	2	84	101	56.2	
1994	541	162			127 (10)	7		128	117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124	11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137	102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108	115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106	144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92	145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156	14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133	116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101	122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158	11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148	107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160	123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250	163	60.6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257	131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237	113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361	214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891	24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680	271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787	185	71.5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884	205	77.6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5,420	930	88.7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633	271	77.9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049	317	72.3
2017	3,230	915	72	61		488	(6)	122	86	1,234	252	73.7
2018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2019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계	60,835	13,908	1,456	1,062	(56)	7,743	(366)	1,832	404	28,777	5,653	76.0
	100.0	22.9	2.4	1.7		12.7		3.0	0.7	47.3	9.3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중재

(2005. 7. 28. ~ 2019.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2015	26	26				
2016	13	13				
2017	1		1			
2018	2		2			
2019						
계	634	573	51	1		9
	100%	90.4%	8.0%	0.2%		1.4%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블 로 그 : pacblog.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 역

부 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 구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 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 전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 MBC 8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 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 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 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전 북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빌딩 405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 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제 주

(63223)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제작 2020년 5월 29일

발행 2020년 5월 29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주)타라그래픽스 02)569-1472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 사례집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